

제390회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8월1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538)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55)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69)
4.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의안번호 2108074)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83)
6.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308)
7.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121)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3)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4)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2)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6)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4)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7)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6)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9)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0)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4)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3)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6)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0)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7)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6)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8)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0)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8)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4)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0)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1)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4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3)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6)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7)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1)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5)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0)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0)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7)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9)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5)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2)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5)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88)
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8)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5)
5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8)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1)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97)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3)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7)
5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5)
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9)
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1)
6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2)
6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2)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3)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3)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2)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60)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0)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5)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1)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9)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6)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7)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07)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4)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6)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8)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8)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2)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20)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7)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04)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01)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6)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9)
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1)
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0)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55)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49)
8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6)
9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8)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7)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0)
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1)
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3)
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48)
9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23)
9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7)
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6)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0)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93)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2)
1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31)
1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2)
1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8)
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05)
1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1)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7)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4)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2)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4)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84)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8)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9)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3)
1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38)
1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51)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8)
1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16)
1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0)
12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7)
121.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3)

1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0)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03)
1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5)
12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12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127.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8.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4073)

상정된 안건

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8) ... 8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5) 8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9) 8
4.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4) 8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3) 8
6.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8) 8
7.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1) ... 8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83) 8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4) 8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2) 8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6) 8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8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7) ... 8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6) 8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9) 8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0) 8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4) 8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363) 8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6) 8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0) 8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7)	8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8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8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8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8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8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9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9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9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9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9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9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9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9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9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9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9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9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5)	9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8)	9
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8)	9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5)	9
5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8)	9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1)	9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7)	9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3)	9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7)	9
5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5)	9
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9)	9
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1)	9
6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2)	9
6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382)	9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3)	9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3)	9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2)	9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0)	9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0)	9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5)	9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1)	10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9)	10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6)	10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	10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7)	10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4)	10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6)	10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10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10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운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8)	10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2)	10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0)	10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7)	10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4)	10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1)	10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6)	10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9)	10
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1)	10
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0)	10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5)	10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9)	10
8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6)	10
9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8)	10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7)	10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0)	10
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1)	10
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3)	10
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8)	10
9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	10
9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10
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6)	10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0)	10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3)	10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2)	10
1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1)	10
1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2)	10
1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8)	10
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5)	10
1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1)	10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7)	10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4)	10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2)	10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4)	10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4)	10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8)	11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9)	11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3)	11
1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	11
1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51) ..	11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8)	11
1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11
1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0)	11
12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7)	11
121.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3) ..	11
1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0)	11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403)	11
1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5)	11
127.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128.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 ..	20
12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22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12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23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10시08분 개의)

다.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법률안 상정과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 심사에는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위법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신규 전보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동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전태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신홍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여러분께 행정안전위원회 발전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8)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55)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9)
4.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4)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3)
6.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308)

7.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1)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83)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4)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2)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6)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7)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6)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9)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0)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4)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363)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6)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0)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7)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8)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5)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4)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0)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1)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3)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3)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6)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7)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1)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0)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0)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7)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9)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5)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5)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8)
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8)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5)
5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8)
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1)
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7)
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3)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7)
5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5)
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9)
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1)
6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2)
6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382)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3)
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3)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2)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0)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0)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5)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1)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9)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6)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7)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4)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6)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8)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2)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0)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7)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4)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1)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6)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9)
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1)
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30)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5)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9)
8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6)
9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8)
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7)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0)
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1)
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3)
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48)
9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3)
9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6)
9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0)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3)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2)
1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1)
1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2)
1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8)
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천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05)
1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1)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7)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4)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2)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4)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4)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8)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9)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3)
1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8)
1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51)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8)
1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1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0)
12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7)
121.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3)
1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0)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403)
1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5)

(10시10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4항까지 이상 1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 중에 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자리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직선거법도 PC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법안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

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제18항, 제6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 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만 아니라 정보 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추가하면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과 수수료 감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을 완료하고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대면 공청회와 병행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작성하여 허가청에 제출하는 예방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 여부 등을 민간에 일임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안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61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13건 등 총 74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국경일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이 기념일의 신설, 주관부처 및 명칭의 변경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 중요성이 크고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야 할 일부 국가기념일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고등교육법의 체계 및 각급 대학의 설립 목적, 제주자치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8항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분확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우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1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관련 지방공사·공단에 대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모든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및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공기업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 개정안 발의 후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미공개정보 활용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개정안과는 다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2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자동차가격으로 변경하고, 소형·친환경 자동차는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1%p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행 대비 인상되는 점, 세율 가산의 기준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60항 및 61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문 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청문제도를 내실화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만 현행법이 청문 주재자가 1인인 것을 전제로 각 조문에서 청문 주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주재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96항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에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의 유형에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으로의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자산과는 달리 자산의 증감 여부의 파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0항 김용환 의원이 대

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상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람이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에 복직이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험도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신분 상실의 우려가 없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최장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이 시행 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안전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소관 총 29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71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비율을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인구의 차이로 인해 표의 증가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은 내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공직선거법 별표2)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공직선거법 별표3)를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정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시한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늦어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내년 2월 18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80항부터 84항까지 김석기·서영교·설훈·이성만·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선거에 거소투표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외선거에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거소투표, 즉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선거 편의성을 제고하여 재외선거인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약 200만 명 중 11%인 약 22만 명만이 실제 선거에 참여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유로 55개 국가,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바 있는데 개정안들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지연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고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도 적용하려고 한다면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공포·시행하는 것이 재외선거의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87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개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개 기간과 방법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22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재임기간 보장을 통하여 소방청장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률상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다른 기관장의 경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인사청문회를 임명절차 중 하나로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방청장도 이러한 특수성에 해당하는 직위인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임기를 2년으로 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인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연퇴직됩니다.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럼 법률상 임기인 2년 동안에는 연령정년을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규찬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총 21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62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안전데이터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보와 재난안전데이터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02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05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을 감독할 경우 소속·감독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행안부와 국가경찰위원회 사이에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에 있어서 권한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06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장의 수사사무 지휘 감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의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것은 조직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경찰수사사무가 아닌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에 대해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간단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과 관련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위해서 각 당의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세 분 신청하셨으니까 세 분만 간단히…… 네 분입니다. 네 분, 3분씩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완주 위원님 대체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쭙려고 하는데요. 듣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제가 발의한 법이 13조 2항입니다. 지방자치법 13조 2항을 읽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시된 게 일곱 가지예요. 그중에 6번,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개별법, 소방청 16개 법률에 348개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 127개, 공동사무 111개, 자치사무 123개 이렇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및 소방사무의 광역화에 따라서 소방사무의 조정, 재정 분담 등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삭제에 대해서 행안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현재는 신중 검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되어 있지만 아직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완전히 분리돼서 하기보다는 지방소방사무도 현재 지역 단위 신속한 현장 대응 등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다 정리되고 나서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박완주 위원 그러면 그것 정리되는 게 언제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직 해 났는데 재정적으로…… 사무 분류 그 계획을 갖고는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은 몇 년 그런 건 아니고요. 방향성을 저희들이 국가직화하고 나서 먼저는 예산부터, 재정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소방청장님 나오셨나요?

○소방청장 신열우 예, 여기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소방청 입장 한번 말씀…… 왜 필요한지.

○소방청장 신열우 지방자치법에 소방업무가 자치업무로 된 것은 정부 수립할 때 1948년도입니다. 그때는 소방이 화재예방과 화재진압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재난이나 구조업무, 구급업무가 많이 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요.

공통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은 저희 소방업무의 3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재난대응 업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다른 부처하고 업무 협의나 예산 확보 면에서도 법률적으로 지방사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지방사무나, 공통사무나, 국가사무나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은 너무 오래되고 그때의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삭제하고 싶은 게 저희 소방의 의견입니다.

○박완주 위원 위원님들, 현명하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15일까지 들어온 선입선출에 의해서 법안 상정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0여 개의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대체토론을 두 분 정도씩 이렇게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어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양당 간사님들과 의견을 교류한 결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가자라고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 없고 서로의 의견을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결과보고서는 간단히 채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쌍용자동차 관련한, 지금 그 사이에 경찰의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소 취하와 관련한 결의안이 올라와 있고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과 양당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크게 무리 없이 내용이 경찰

쪽하고도 이야기하고 법원 쪽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정치적 의결행위로 의미 지으면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한 결의안 통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결산 관련한, 작년 1년 동안 각 부처에서 진행한 결산 상정이 있습니다. 결산 상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양당 간사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5분 그리고 3분, 원하는 분에 의해서 하고 5분 질의는 모든 분들이 순서대로 해 나가고 또 3분은 보충으로 여러분께 받아서 질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후까지 갈 상황인데요. 혹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질의를 못하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서범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심의의결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자문기구로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심의의결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심의 의결이지만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자문기관으로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는 걸 총리실로 하자, 그다음에 심의·의결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자, 또 여러 가지 사무기구도 설치를 하자,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범위도 독자성을 인정해야 안 되느냐, 인원도 좀 늘리자, 그다음에 위원장의 역할과 임무도 규정을 하자, 국회 출석 청문회 대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좀 더 실질화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가정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노력이 약간의 제도적 개선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심의 의결대상이 확대된다든지 또 형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회의 숫자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한다든지 또 그 대상에 있어서 경찰청장의 자의적인 것보다는 꼭 필요하게 심의 의결의 대상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선미 의원께서 발의한 것처럼 실질적인 실질화는 되고 있지 않아서……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또 행안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수년간 해 왔던 역사적인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등등을 잘 따져서……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자치경찰법,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점점 권한이 커지고 몸집도 커지는 상황에서 뭔가 민주적 통제에 대한 부분에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행안부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 이걸 공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안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은 소위 과정에서 논의할 때 저희 행안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미리 준비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소위에서 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대체토론을 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된, 그런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한해서는 입찰자격을 2년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건데 행안부에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다른 입찰 제한사유와 형평에 안 맞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재해 현장에서 연간 2000명 이상씩 사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산재 사망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입찰에 있어서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사실 제안이 있어서 입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형평에 안 맞다라고 이렇게 한 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중대한 뇌물을 줬다든지 담합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합, 뇌물과 산재 사망사고를 비교하면 사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에도 이런 입찰 제한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걸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행안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전체 다 신중 검토 의견은 아니고요.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중대 산재라든지 그런 중대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제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의 제재를 할지는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제재 조건과 사유 등을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의 형식이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필요하면 또 대안도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행안부장관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지방공사·공단이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 국가라는 것. 작년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맞아서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했을 때 최고 38%에서 최저 14%로 나타났습니다.

격차의 원인으로는 근속기간이나 고용형태, 직무 등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행안부도 인정한 것처럼 상위 직급에 여성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전국 공사·공단에 여성 1급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이은주 위원 유리천장지수, 한국 9년 연속 꼴찌입니다. 당시 행안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등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도 조사해서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올해 7월에 클린아이에 성별 평균임금이 공시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법안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각 직급별 성별 현황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좀 전에 유리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을 상위 직급에 승진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 행안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개정 과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시리라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7월 달에도 공시를 했고 그 입법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공시하는 것을. 다만 의원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직급별, 직종별까지 하다 보면 개인이 사실상 판명되게 되면 개인의 임금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은주 위원 예,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러니까 방지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법의 취지에 동의하니까 그 제도적 방안을 잘 마련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1분, 왜냐하면 생중계도 있고 오후에 대체토론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오전에는 합의된 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분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자당입니다마는 이채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는데요.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저는 이게 마땅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장관님에게 의견도 드리고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실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는데 작년입니까? 소방직이 중앙공무원화됐지만 조직이든 인력이든 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청장이 청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소방·안전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재원과 조직 위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형동 위원님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님의 간절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후에 대체토론 하면서 현안까지 말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아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랬는데 이명수 위원님이 언제 손 드셨어요? 이렇게?

○이명수 위원 예, 잘 못 보셨나 봐요.

○위원장 서영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안 했는데……

그러면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1분만 해 주시겠습니까?

2분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행정절차법, 지금 공청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청회가 아직도 형식적이고 통과되레다 이런 지적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단독 공청회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 격차나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청회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실제 공청회 대상이나 또 시행 시기나 방법,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 등에 의해서도 있지만 이런 비대면의 현상 이외에도 사실은 온라인 공청회라는 것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공청회가 내용적으로 형해화가 된다는지 또는 공청회 본연의 임무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안 통과되고 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면 공청회하고 온라인을 병행하도록 돼 있는데 대면 공청회를 한 번, 두 번 해도 실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다, 형식적이다, 통과되레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단독 공청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기왕에 이 법이 통과돼서 온라인 공청회가 시행될 때 기존의 공청회제도 포함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입법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7.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7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십시오.

이 결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된 문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또 경기도 쪽의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하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러나 또한 양당 간사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무리하게 필요 없는 것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까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작년 국감이 끝난 지 1년이 됐고 이제 앞으로 또 금년도 국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해 국감 할 때 일부 시도에서 그냥……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웬만한 민감한 자료라든지 불필요한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자료는 잘 안 내놓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양해를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아예 자료를 주지 마라, 일반적인 자료도 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정부부처나 자치단체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는 위원장께서 또 간사인 저도 직접 자치단체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제출해 주면 좋겠다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국정감사 무력화를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금년 국감을 앞두고…… 오늘 지난해 감사보고서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감을 앞두고, 불필요한 많은 자료를 정부부처나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감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간사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그러면 두 분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전적으로 박완수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1년이 지나서, 당시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정감사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위원들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아까 박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민하거나 민감한 부분은 내놓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올해 국정감사 때부터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 단체장이 꼭 필요한, 여기서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단체장을, 자료 요구할 단체장을 출석시키는 아주 강한 방법이라도 해서 국정감사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안 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올리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하실 때 안 되면 위원회에 다시 요청하셔서

위원회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은 박완수 간사님도 제안하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자료에 매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료……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너무 기본적인 자료들,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박완수 간사님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에 관해서 꼭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8.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등 117인 발의)(의안번호 2104073)

(10시53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쌍용자동차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 전에 제출했던 결의안인데요.

의사일정 제128항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 대한민국 등이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의 취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은주 의원님 발의로 지난 2월 18일 상정되어, 작년입니다.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3분, 말씀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먼저 경찰청장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3년쯤 됐으니까 지난 2018년 9월 달에 홍 모

경감이라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조직원들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이라고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1인시위를 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알고 있나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김용판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세월호 사건 때 민노총에서 많은 불법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 7700만 원 민사소송을 경찰 수뇌부에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은주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심도 이해하고 또 정치적 어떤 행위로서 당시 쌍용자동차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겪으니까 온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되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결의안이 채택된다 그러면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결과론적으로 가해자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범죄자 입장에 서게 된다. 반대로 당시 가해를 하고 고통을 준, 불법 시위를 당시에 획책했던 근로자는 결과론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민주열사화된다.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두 가지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온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고 법질서의 근본의 문제다.

그래서 경찰을, 피해 경찰을 가해자로 범죄자로 보고 또 반대로 불법 시위자가 그야말로 피해자, 민주열사화되는 듯한 이런 문화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면에서 이것은 현재 1심, 2심이 끝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경찰청에서 소를 취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수차례 벌써 여러 번 던졌던 의견이고, 결과론적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 준다 그러면 경찰청장에게 ‘너 불법해라’라고 권유하는 결과가 된다. 아무리 온정주의 입장에서 또 정치적인 결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입법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잘 살피셔서, 이은주 위원님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것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청장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저희 경찰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심인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되어 있고 또 그 판단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약 같은 것도 충분히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회의 입장과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이 가해자가 되고 또 한쪽이 민주열사가 되고 이런 유형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이은주 위원님이 다시 정리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은주 위원님이 의견을 발표하시게 될 텐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나가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김용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국가인 부분과 개별 경찰관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개별 경찰관들이 제기한 위자료 관련 손해청구소송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을 고려해서 경찰청의 소취하 의견 제출 대상을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또 정부에 촉구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도 피해보상은 제외하고 결의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회인 점과 또 진상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명칭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의안 내용 중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배상금 액수를 오늘, 2021년 8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항소심까지의 판결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9년에 인권위원

회와 경찰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판단되었고 당시 경찰청장께서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목숨을 잃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풀자라고 하는 정치적 결의문이고 법원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결의문에 대해서 법원은 법원대로 또 다른 판단이, 충분히 독립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들이 제시된 상태이고 원래 냈던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해서 내용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경찰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치유와 치료 그리고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결의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윈윈하는 내용으로 결의문이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보시고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김용판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판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기록하는 선에서 합의된 형태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보다는 김용판 위원님의 의견을 표기하고 그리고 전체선에서 통과된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할까요?

○이명수 위원 기회를 한번 주세요. 반대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위원장 서영교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표결의 기회를……

(「표결」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이요? 그러면 표결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박완수 간사님께서 표결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표결해서 남기시는 것보다

의견으로 남겨두시고 가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반대의견에 어떤 분이 반대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놓고 통과하는 형태로…… 이것은 전체 합의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통과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나중에도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명수 위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수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요?

○백혜련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 반대의견이십니까?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박완수 위원 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 반대이십니까?

수정안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수정안 자체가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명수 위원 표결은 하지 말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할까요? 경찰청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할까요?

간단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의견을 요점정리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취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소송 취하는 법률적인 제약 등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기타 결의안 내용이라든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결의안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반대의견은 국가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취하 자체는 국가, 경찰들이나 이쪽에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양쪽 다 어떠한 폭력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모두 다 의견을 같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내용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인사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 일정이 너무 많아서요.

○이은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30초만 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오늘 이렇게 결의안 통과시켜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힘써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결의안 작년 9월에 발의해서 통과까지 1년 걸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등진 상황에서 최근 쌍용차 회사 사정이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겹치면서 아침마다 신문을 열기가 겁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이 없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 모아 주셔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의안이 8월 임시회에서 처리돼서 노동자들에게 국회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쌍용자동차 가족과 관계자분들이 아픈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여러분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경찰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결의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로 양쪽이 다 트라우마들이 치료될 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상황을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125.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12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번호 2110475)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11시06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결산입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제12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장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제안설명과 결산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간단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액은 총 608억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추경 포함 총 68조 1197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총 61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8조 949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68조 43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교부세 50조 2921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4조 625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조 9927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5212억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총 4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총 51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4회에 걸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총 12조 5726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및 태풍피해복구비 등에 총 87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간단히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도 투·개표 특별대책과 절차사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나 투표참여 권유 활동 등 일부 논란이 발생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는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경상이전수입 등 총 122억 원, 세출결산액은 7107억 원입니다.

이 중 주요 사업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관리비가 3394억 원, 인건비가 2024억 원, 정당보조금이 907억 원입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짐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에 예비비 1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국회 합의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와 세입결산액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직제 및 예비비가 2020년 12월 1일에 승인되었고 12월 10일부터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당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비비 41억 94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40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4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은폐된 과거의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위와 같은 위원회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 소관 예비비 사용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제안설명 및 결산보고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 등 총 58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조 2362억 원으로 이 중 정부자원관리 부문 995억 원, 일반행정 부문 763억 원, 공적연금 부문 3조 60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시험 코로나19 방역대책 시행 등에 총 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22조 74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간단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보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 및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등 총 982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1조 261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8조 7451억 원 등 총 11조 176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해복구비 충당 등으로 총 58억 2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등으로 총 218억 9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해안경계시스템 구축사업 지연 등으로 총 311억 1300만 원입니다.

불용은 총 1320억 3100만 원으로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관서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사업을 위해 60억 3600만 원을 배정받아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경찰병원 운영 관련 회계로 총 80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자치경찰 운영 지원 관련 회계로 총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마지막입니다.

소방청장님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대형헬기 납품 지체 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수입대체경비 등 132억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액은 당초 예산 2011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176억 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2187억 원이며 이 중 2085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방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방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이 현장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시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표적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등 차관 소관과 인사혁신처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결산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사업의 과다한 예산 변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에서는 11차례에 걸쳐 총 15억 6800만 원을 전용·이용·조정하였고 이 중 10억 3600만 원은 동 사업 내에서 전용·조정하였는바 과다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연례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원사업 49건 중 2020년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25건에 해당하고 그중 14건의 사업이 집행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각 사업의 실집행률이 5.5%, 5.6%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022년 2월 3일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 규모 및 수단·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서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참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83%가량으로 다소 저조하며 특히 제3회 추경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4회 추경예산의 집행률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규모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및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사업은 보상금 예산편성 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18 보상금 예산은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례적으로 부족액을 이·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급증하는 관계로 예산액 대비 118%를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향후 보상금 예산편성 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첫째,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사업에서는 전임자의 임무 종료 후 후임자의 파견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MOU 체결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발과 파견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은 대여학자금을 지급받고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 등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이중지급률이 줄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단이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조하여 이중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후적으로 심사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중지원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기관 검토한 내용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경찰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강기 안전인증 기반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보조금이 일시에 교부되고 전액 이월 및 재이월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적의 침공이나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대피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지 확보 지연, 관급자재 수급 문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최근 4년간 실적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른 예산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통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 중 7억 6600만 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내역에 목적외로 집행하였고 보안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5700만 원을 목적외로 통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소년범 조사 전문가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사업들의 대상인 소년범과 가출인의 사생활과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무인단속장비에 대하여 기존 제한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에 대해서까지 단속을 일괄적으로 유예한 결과 386억 원의 과태료 세입 결손을 초래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해안경계 과학화사업은 의경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에 대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9%, 이월률이 40%로 지난해에 이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은 2020년도 말에 예비비를 승인한 결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의 96%를 이월하는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과 전문위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3분 내로 짧게 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소관입니다.

국가선거보전비용과 지방선거보전비용 미반환금에 대한 수납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금 15억 900만 원에 대한 총 14건의 징수결의를 하였으나 실제 수납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2000만 원, 1건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미반환금이 궁극적으로 모두 수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선거보전비용 미반환금의 경우 그 규모가 181억 6300만 원에 미반환자는 66명에 달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비 귀속분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수결의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징수결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선거보전비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적기 확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 등 안정적인 소방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나 산림청 등 헬기를 운용하는 타 기관의 경우 2G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0년 7월이 도래하기 1년 전인 2019년도에 LTE 통신 기반 헬기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청은 2G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소방헬기 통합 지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적기에 편성·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ISP, 즉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이의 절차를 생략한 채 2020년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1회 유찰, 두 번의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다음 연도인 금년도 5월 말에야 소방헬기 통합 지휘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등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사업은 매우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여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대비 10%의 예산집행률과 9%의 프로그램 참여율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환자이송 등의 긴급대응업무로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강도가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 중요성 및 시급성이 더욱 요구되었던 사업으로 이를 축소 운영하기보다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양당 간사님과 합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장관님, 어제 보도가 됐는데 인천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한 지 8일 만에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런데 병원 이송도 못 해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입원환자가 222명 생활치료센터에, 그런데 1명의 의사가 근무하는데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치료센터보다 오히려 재택치료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대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부분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고 공공부문이 모든 걸 떠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과부하가 생긴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확보도 정부가 다 책임질 게 아니고 대기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부문도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 줘야 되고, 생활치료센터도 여기를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재택치료라든지 외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허용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확진 검사나 구조·구급 활동도 전부 공공부문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부문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가 조사 중이니까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 이후에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택치료를 저희들이 자가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자가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확장·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는 자체적으로 지금 질병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대된……

○박완수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공부문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통제 위주로만 하지 말고 민간부문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자가치료 마저 말씀드리면요, 자가치료는 현재 기준으로 좀 엄격하게 되고 있지만 경기도 등에서 확대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박완수 위원 2024년도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경찰이 대공 관련 정보 건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경찰이 과연 대공수사권 이관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청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받으셨나요?

○경찰청장 김창룡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저는……

○박완수 위원 보고는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난 번에 지휘는 안 해도. 청장님 답변하실 때마다 그게 다 달라져요.

○경찰청장 김창룡 그게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 때, 착수 때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따로 보고를 안 받고 있는……

○박완수 위원 청장님, 간첩 혐의자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검거했나요?

○경찰청장 김창룡 통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노무현 정부 때 19명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2명 했습니다.

이번 간첩단 구체적 혐의나 적용 법률은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찰청장 김창룡 목적수행 그다음에 회합·통신, 찬양·고무, 하여튼 국가보안법 위반에 주요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국가보안법이지요.

일부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있는

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청장 김창룡** 지금 현재 북한의 유입이랄까, 남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보안법은 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좀 특별한 것이 간첩단이 스스로 자기들 언론을 통해서 적발 사실을 보도를 시키고 구속영장청구서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왜 이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찰청장 김창룡**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추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박완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지금 청주만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내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북측에도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아마 보도를 시켰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단에 옛날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찰청장 김창룡** 예, 저희들이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다 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이 있다고 보고 확대 수사계획도 안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서영교** 확대 수사계획.

○**박완수 위원** 다른 지역에 대한 확대 수사계획이 있는지……

○**경찰청장 김창룡**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추가 수사단서가 발견이 된다면 그 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위원** 청주의 한 시민단체가 이 간첩단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다고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겁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고소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중에 수사단서가 발견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경찰이 과연 대공수사를 할 만한 역량과 그 대비 태세가 돼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국정원,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국가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도대체 주체를 누가, 어느 기관이 주체적으로 이것에 대비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번 사건부터 특검을 하든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국정원이 했던 수사역량이랄까 노하우 등을 저희가 오롯이 전수받기 위해 가지고 이미 지난해에 국정원과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이번 사건 수사도 그렇게 합동수사,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한 결과로서 밝혀낸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문수사관 특별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이관 또 예산 또는 수사기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합동수사 및 노력을 통해서 수사역량을 차질 없이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가장 열심히 또 많은 신규사업을 집행한 게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산소위, 예산소위 다 들어가면서 일을 봤는데요.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 집행에 힘을 모아 주신 정부 장관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결산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야 관계없이 실행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이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절차라

든지 기간 또 그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준비,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실집행률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 주실 것을 이번 결산 과정에서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집행률은 98.2%여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낮은 것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정이라든지 또 본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또 해서 정부에서 예산안으로 담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정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필수사업, 특히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재난대응훈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집행이 꼭 돼야 될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꼭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다 예측할 수 없어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등을 다 상정하고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일정이 다 가오면 거기에 따라서 훈련계획을 바꾸는데 그렇다 해서 훈련계획을 전체를 취소하거나 모두 다 연기하지는 않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훈련 횟수를 오히려 조금 늘리는 것 등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런 온라인 상태라 하더라도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전 국민

보편 지원이나 선별 지원이나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항상 논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100% 도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무하시는 장관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조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권한이기도 하고요. 다만 다른 시도와의 관계라든지 또 이번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출하고 나서 약 2개월여를 여야가 논의하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에서 10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임호선 위원** 한 해에 자살하는 경찰관이 몇 명이지요? 정확한 통계 기억 안 나시겠습니까마는……

○**경찰청장 김창룡** 평균 한 17.5명 정도……

○**임호선 위원** 작년에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평균 20.5명인데 작년에는 제가 통계를 받아 보니까 24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마음증진 프로그램이 비교적 경찰이 잘 돼 있는데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회 생중계가 오늘 오후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선까지 한다면 이영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를 하고 이후 속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한병도 위원님과 박완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백혜련 위원 경찰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2019년까지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가 20년부터 예산 배정되고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성과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711건 중에 533건 조정을 했는데요. 갈수록 이런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백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런데 이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이 사실은 예전에 검찰이라든지 거기에서 더 많이 했던 건데 이제 경찰청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들을 하다 보면 좀 강제적으로, 이게 통계 수치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조정을 양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백혜련 위원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백혜련 위원 지금 머지포인트 환불 불가 사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금감원에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수사 의뢰가 돼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머지포인트가 처음 4년간 계속해서 적자 상태였거든요. 4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거지요.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계속 적자 상태예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하면 폰지 사기 업체로 거의 보이거든요. 다단계,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갔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적자인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고발을 했지만 수사를 그것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게 중요하냐 하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경영주 또 임원진들은 고급 차량들을 다 운행하고 다니고 거의 다 스포츠카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래도 어쨌든 잔여 재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 사기 형태나 횡령, 배임 이런 재산범죄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재산 빼돌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지금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백혜련 위원 지금 공무원을 위한 마음건강센터 사업 상담 건수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대비 130% 이상이나 급증이 됐어요.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최근에……

○백혜련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최근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도 저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번아웃에서 이런 마음건강센터의 상담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백혜련 위원 부족함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지금 저희도 조금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건강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재해 예방이나 치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이은주 위원** 인사혁신처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처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서 예규 개정을 한 건데 매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개정된 예규를 보니까 처리 대상도 확대했고 또 신고센터 조사 방해행위 금지, 조사단계·처리기한 명확화 또 피해자 요청에 따른 종결 근거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내실 있는 점검이 이제 가능해 보이는데 혹시 예규 개정 뒤에 신고센터 신고 접수 늘어났나요,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게 성비위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기에 2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고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문뿐만이 아니라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몰라서 신고센터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없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센터 상담 인력이 한 명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이 74만 6000명이네요.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상담사 한 명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인력 문제 해결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지금 현재 이 한 명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 한 명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밖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한 명 갖고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명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부처와 협

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신열우** 예, 여기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올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 복합건물 화재 때 자신의 집에 고립돼 있는 반려견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이랑 함께 들어가서 구조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반려견 무사히 구조하고 다 무사히 나와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런 상황, 화재·지진·수해·재난 일어났을 때 자신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소방안전교육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집행은 잘 됐는데 아쉬운 게 이런 점입니다. 특히 소방안전교육이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반려동물 동반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한 대피방법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청장 신열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작년 선거관리 예산 중에 국회의원선거 관리 예산은 제대로 집행된 것에 비해서 재외선거관리 예산 33.2%, 위탁선거관리 예산 41.2%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둘 다 예년에 비해 집행률이 낮은데 총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거사무가 중지되고 하는 등의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그게 반 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이은주 위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 우리 사회에 끼친 변화, 선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행히 국내 선거 유권자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재외국민 선거고요. 앞서 법안 상정 때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재외투표 절반밖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였지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못 하는 게 사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표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투표율 낮은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좀 고민을 갖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우편투표 상시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에 관한 개정 의견도 국회에다 제출한 상태고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우편투표에 관한 의견을 선관위가 제출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장관님,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나 국민 정책만족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간략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 또 KDI에서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긍정적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맞습니다. KDI 연구보고에 따르면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카드매출액이 한 4조 정도 늘고 투입 자원 대비 약 26% 이상 효과를 봤다, 소비 진작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서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 5차 부분이 88% 상생기금 선정을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때 추경 결정할 때 여야가 합의했던 기존 80%……

○박완주 위원 88%……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플러스알파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복지부, 기재부하고 해서 DB를 만들면 그 제출한 DB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전 국민일 때는 다 나눠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분, 일부 제외할 때 사실은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건보 보험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역하고 직장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제에 혹시 지금은 어쨌든 전 국민…… 외국은 이미 근로소득, 자산소득, 금융소득 다 해서 체계들을 갖춰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특히 전 국민 또는 전 국민 중의 몇 %의 대상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에 따른 행정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안이 없어서 작년처럼 건보료 기준으로 합시다라는 그런 한계가 계속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소득 하위 몇 % 또는 소득 상위 몇 % 등등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DB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건보 체계도 있고 재산세 체계도 있고 다양하게 흩어진 것을 범부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지난 11일 날 ‘오는 9월 안에 관련 입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잠깐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는 있지만 표 한번 봐 주시면 이

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방 이양을 했지만,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재정 불균형 조정은 좀 됐지만 표 보시면 최근 4년 광역과 기초단체 규모를 보면 오히려 2020년 광역단체 규모는 3% 증가한 반면 기초는 0.7% 감소하는 이런 현상 보완을 2단계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단계 재정분권은 이제 일단은 정부 내 이견이 해소됐고요. 당과는 합의를 해서 현재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1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등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음에도 광역과 기초 배분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 중요성이나 기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했던 7 대 3의 구조를 일단은 6 대 4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기초가 좀 더 많은 재정분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내용들이 당 또 정부 내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박완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영 위원님 양해에 따라서 이형석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3차·4차 추경을 통해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행률이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83%~84%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집행행률이 낮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3차 추경예산 집행이 저조한 자치단체가 4차도 저조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너무 관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작년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집행행률이 낮은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를 좀 보완해서 희망근로에 대한 집행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현재 채용률 등을 보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작년에 낮았던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의 사정을 저희들이 감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3차 추경이 편성되고 난 뒤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희망근로 일자리 대상 기관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그걸 반영을 하면 오히려 집행행률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다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상당히 집행이 됐고……

○서범수 위원 휴업수당으로 간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또 위원님이 그 질의도 말씀도 하시겠지만 관련해서 사업장이 폐쇄됐을 때 임금을 전혀 지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일부 또 지급하고……

○서범수 위원 휴업수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랬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 휴업수당이 어느 정도 나갔느냐라고 자료를 달라 하니까 지금 그걸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치단체 소관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그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겠지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일자리 목표한 것은 얼마인데 실제로 동원된 사람은 몇 명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일을 못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람은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얼마나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그걸 참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안부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혈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해서 돈을 번 사람하고 휴업해서 놀면서 돈을 번 사람하고의 차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손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업수당의 지급이 적절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재배치한다든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다든지에 대한 작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상당히 이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어느 사업장에 또 얼마큼의 휴업수당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파악을 해서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서범수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서범수 위원** KICS를 개편하기 위해서 예비비 60억 3600만 원을 배정받았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월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서범수 위원** 저 잘 몰라서 물어요.

○**경찰청장 김창룡** 형사사법 구조 관련 경찰법 개정이 연말에 임박했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실컷 KICS를 개편한다고 예비비 60억 36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57억 9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서범수 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예비비를 멋대로 배정을 받아서, 물론 자율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없는 예비비를 많이 배정을 해서 이월을 합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보통 전산시스템 등을 새롭게 고도화하거나 할 때 ISP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예비타당성 비슷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걸 거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것을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관련 예산 확보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지연이 됐어요? ISP 과정에 예비비를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ISP는 사업분 완료를 하고 그 후에 예비비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범수 위원** ISP가 언제 끝났는데요? 11월 15일 날 끝났어요, 20년 11월 5일 날. 뻔히 이월되는 걸 알면서도 60억을 예비비로 배정받은 거예요. 이것은 결산할 때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결산소위 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통상 예산이 보통 8~9월에 다 끝나고 실제 ISP가 11월에 이루어져 가지고 좀 예비비를……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11월 5일 날 ISP가 끝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KICS 계약은 20년 12월 29일 날 했어요. 뻔히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져 봅시다, 예산소위 때.

○**경찰청장 김창룡**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도시가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하반기 중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지요?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지수 등등이 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수를 차용해서 쓰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 이번에 지수를 마련해

서 일단 소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는데 다만 균형발전 특별법의 그 개정 내용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의원님들 법안 발의를 포함하고 또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한 올 10월 이전에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입법으로 정부안도 현재는 제출할 생각입니다.

○한병도 위원 지금 국가적 주요 의제로 지방의 위기, 특히 저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보면 현장에서 먼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현실로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에 좀 보강을 해서 정말 주요 의제로 행안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걸 보면 지역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것,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강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긴 한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지 지자체 교육·문화·SOC 국가보조사업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 중심의……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지역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교육·문화·생활 서비스라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지, 특화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이런 종합계획들이 잘 반영이 돼서 행안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철저한 고민이 더 반영이 돼서 잘 집행되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래서 사실 행안부 내에서도 TF를 만들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용역을 맡기고 나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TF를 만들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재정과 입법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모두가 걱정하는 그럼에도 사실 개선되고 있지 않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 군데 이상이 지금 다 대상 지역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위원 특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약 문제 언론상에 보면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 통해 가지고 유통과정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통과정뿐만이 아니고 마약 사범이 2017년~2020년 보면 3년 새에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의 하나가 젊은 층에서 많이 확산이, 증가세가 빠른 것 같습니다. 10대만 보더라도 2017년에 69명이었는데 20년에는 241명으로 4배가량이 늘고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빠른 숫자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생활 속 깊이 마약 문제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큰데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관련된 것 보면 전문가 채용이라든지 마약탐지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1억 원이 불용됐다든지 예산이 대거 감액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마약탐지장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그 예산보다 좀 낮게 돼 가지고 불용 처리된 게 있고 나머지 해외출장 등에 대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리 생활 주변에, 특히 젊은 층이라든지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지고 마약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병도 위원 그리고 요즘 경찰병원 관련된 것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청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 포천·가평 지역구 최춘식 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최춘식 위원 그 말은 공무원이 불공정하고 특정한 어떤 편향적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춘식 위원 인사혁신처는 각 행정기관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감사하고 부적절한 예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저희는 본래 구체적인 공무원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최춘식 위원 다음 들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현재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있는 것은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난 7월 3일 날 민주노총 종로 집회 때 8000여 명이 모였다는 그런 추산이 있고 주최 측에서는 4700명만 자체 검사한 후에 본인들은 다 음성이 나왔다고 책임이 없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방역 당국은 숫자뿐인 4700명 검사의 진위를 확인할 생각도 없고 당시 전체 참가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도 없습니다. 또 나머지 3300명의 검사 진행에 대해 요청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날 민주노총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에 19일 날 질병청 소속 공무원 네 명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장님, 이것 혹시 확인됐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동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해당 기관이 먼저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최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짚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 1명은 질병청장 소속의 중앙역학조사반장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질병청은 민주노총 4700명 검사 결과를 이 단톡방에서 최초 전달받았어요. 질병청이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행정명령을 고시했는데 민주노총은 1장짜리 숫자뿐인 검사 결과를 그것도 채팅방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해 광화문 보수 집회 때는 방역 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다 제출받았어요. 그래서 개인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때 쓴 표현이 뭐니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너무나 다른 이런 조사업무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행정명령에 민주노총의 공간인 채팅방을 활용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해 가지고 조사기관과 조사대상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일들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4명의 공무원 또 함께 이와 같이 공유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일선 방역 현장에서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먼저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할 사항은……

○최춘식 위원 공무원의 기강을 이미 흐린 것 아닙니까? 하지 않도록 돼 있는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무원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장을 뛰어넘어서 먼저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59조에 따른 조치가 안 됩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이게 국가공무원법 59조는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소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공정한 업무 수행이 안됐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기관과 조사대상이 부적절한 정보 공유를 했다는 자체가 59조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먼저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춘식 위원** 인사혁신처의 입장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일단 관련 현황들을 제가…… 저희들의 처리 권한이나 위치나 처리 상황 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에 해당이 되긴 되는 거지요, 이러한 사항이?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저희가 직접 조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처리에 대한 복안을 주세요.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예.

.....
○**위원장 서영교**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율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의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결산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우선 현안질의 경찰청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철거건물이 붕괴되면서 아홉 분

이 그 자리 현장에서 사망을 하였고 여덟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홉 분의 장례식은 절차가 끝났고요. 여덟 분은 상태가 호전되신 분들은 재활치료병원으로 이동돼 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고 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몽규 회장이나 권순호 대표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피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표출하고 있어요.

청장님,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의 초동수사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저희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조합 그리고 하청, 재하청 전반에 걸쳐서 수사도 하고 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형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군데 기관에서 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 9일 날 국토부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군데 다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했었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했다’ 두 군데 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국토부는 정확히 초창기에 언론에 보도됐던 평당 28만 원에서 평당 4만 원까지 불법 재하도급이 됐던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경찰청 수사본부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빠졌냐? 공사비 파악을 못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파악을 못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확보했느냐?’, ‘계약서 확보 못 했다’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청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홍식,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이형석 위원 9일 날 사건이 발생되고 13일 날, 나흘 만에 문홍식은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최근에 문홍식은 자진 귀국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잠적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문홍식이 13일 날 해외로 도피한 바로 이틀 뒤에 문홍식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문홍식은 그동안에 학동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장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바로 출국금지나 입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공사금액도 실금액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홍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이미 사고 직후에, 한 이틀 후에 바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경찰로서는 나름대로 초기에 사실관계 신속 파악하고 관련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미처 전체적인 관련자 특정도 되기 전에 해외 도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형석 위원 문홍식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서에도 보면 인터폴 공조수사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적색수배가 되어 있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형석 위원 빨리 조치해서 소재 파악해서 국내로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소환하시기 바라고……

○경찰청장 김창룡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 5일 날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해 달라고 진정서 제출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형석 위원 철저하게 현대산업개발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리고 장관님, 행안부가 재난에

대한 최종적인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재난관리본부에서 광주시와 함께 지금 어떻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관님이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초기에 저희들이 가서 가족분들도 뵙고 또 광주시가 나서서 하는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서 즉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제가 잘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피해 구제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요.

진화위 위원장님,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과거사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요. 각오 한마디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지금 코로나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관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적절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후로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영 위원님 첫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7월 23일 날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전 국민 100% 지급 주장을 폈습니다. 긴 시간 당 정청, 여야 합의 끝에 최종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결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최종 결정, 최선이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정부안이 있었어요. 그 정부안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위원 지금 지역구가 안산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영 위원 거기 주민등록 되신 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결론을 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존중해야 될 결론에 대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관님도 처음에는 대상자가 아니셨는데 25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이거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쭙 봐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기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토론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 그리고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내부적으로도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지사직을 이용한 매표행위다라는 비판이 거센 결로 알고 있고요. 금주 월요일 날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이익원 기재부차관도 장관님 말씀하신 논조에 동감하면서 경기도에 대해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권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감사하실 수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법 12조에 따르면 지자체

가 경비를 많이 지출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도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교부세를 삭감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경기도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예산 90%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 100%에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에 정한 교부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다소 아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도에서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물론 도의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재량의 범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위법하다든지 법 위반에까지 나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 위원 지금 경기도 내 다수의 시장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의회 또한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부 조건을 어긴 것은 분명하고요. 이 부분이 법령을 어겼느냐까지는 사실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재원 마련이 각 도 안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더라는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재정적 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현재는 그럴 의향이 없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또는 조건이 나빠지거나 저회들이 표현할 때는 위기라든지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지만 현재 100% 지급하는 것만으로 경기도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달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당정청이 협의를 했었고 행안부가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사인을 하신 그 결론에 대해서 지자체 한 군데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행정적 결정에 대해서는 용인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 의견을 다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지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단 결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보니까 지방 소멸지역,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책
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TF팀도 꾸리시
고 용역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는 게 국가경쟁력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인구가 많아서 정
말 걱정되는 곳이, 불편함이 많이 있는 곳이 있
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
시오.

인구가 많아서 불편한 지역, 경기북부 지역입
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세워 주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김민철 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인건
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예산 총액 318억 7300만 원
중에 이·전용액이 22억 9400만 원 그리고 이결
제외한 예산 현액이 295억 7900만 원인데 그중에
한 6900만 원 정도만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
렇게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잘 처리된 것 같아
요, 내용 면을 보면.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이·전용액이 22억 9400
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불용액이 30억,
19년도에 31억이 넘었는데 20년도에는 6900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18·19년도에 보면 이·전용액
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이러
게 나와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의관 인
건비에 관련해서 계속 매년 결산이나 국감 때 지
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전용을 다른 쪽으로 쓴 것 같은데 어디에 쓰
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그 사용처보다는
먼저 말씀드리는 게 법의관이 매년 정원 미달되
다 보니까 그 인건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의학부를 신설한다든지 전문직공
무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제도개선을 완성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법
의관의 처우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에서 수당 인상 요구를 해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매년
부검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법의관 정원과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
과 현원에 있어서 맞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난 19
년도에는 정원 55명, 20년도에는 53명 그리고 현
원은 31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우 개선을 잘 해 가지고 서로 들
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처우 개
선을 위해서는 방금 제가 두세 가지 위원님께 말
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처우 개선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원하고, 지금도 사
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
지만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하
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원 충원율이 지
나치게 낮은 부분은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
원이 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
지 방도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
다.

○김민철 위원 비상근 법의관이 이렇게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인데
지금 법의관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
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저희 소속 기관입니
다.

○김민철 위원 소속 기관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야
기인데 이것을 경찰청 쪽으로 배속해서 하는 게
더…… 직제 개편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어떠
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보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미국이나 그런 데는 과학수사대 같은 경우는 지역경찰에 들어가서 유기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다만 지금 국과수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체 부검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꼭 경찰수사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이번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과수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만 해도 검찰하고도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 수사권이 경찰로 갔으니깐 지금 그런 쪽과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결산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장관님 입장에서 금년에 하는 결산이 전과 다른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특별하게 제가 하나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초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 기능을 작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국민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런 건수도 많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더 해서……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재난지원금 관련 국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이 시도별로 형평성이 안 맞다, 인구라든가 발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많이 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것은 결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백신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직접 실무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전자정부예요. 그런데 백신 예약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느냐. 이것이 사전에 정부 전체 입장에서 조정이 되게 돼야 되는데 대규모로 신청이 온다 이런 이유 또 개발 기간이 짧다 이런 이유로 한 번 잘못된 오류를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자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국민한테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자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인력이나 장비나 기술적인 면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좀 더 이런 일이 생길 때…… 국민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한꺼번에 신청자가 많다, 그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한번 챙겨 주시고, 서면으로 일단 받았는데 좀 약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이렇게 막연하게 러프하게 하지 말고,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사전에 방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접속 장애가 난 이후로는 행안부의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이후에 원활하게 하는데 TF 등을 만들어서 잘 해결했습니다.

○**이명수 위원** 다음으로 광복절 행사는 행안부 주관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번에 제가 직접 지방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정말 광복절 행사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광복회장의 기념사, 본인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녹화한 내용을 보냈거든요. 지방에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다린 것은 광복절은 국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축사나 경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
요, 순서에. 지방에서 한다고 광복절이 지방 차원의 행사는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의 행사를 지방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행사 전반에 대해서 행안부가 사전에 알고 충분히 내용도 봤을 텐데, 언론 보도에 보면 차관이 직접 가서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이번에 미흡했는데 장관님은 전반적으로 광복회장의 기념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알고는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사전에 알고 있었
고요.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행사 참여자라든지 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님의 경축사를 제외하고, 특히 광복회장의 기념사도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녹화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실시하는 등 저희들로서는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행사를 잘하기로 노력을 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에서 대통령님의 경축사가 안 나왔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경축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님의 경축사가 나와야지요. 없었습니다. 시·도지사도 대체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광복이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도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거나 이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고 광복절 행사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광복절이라는 것은 다른 기념일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가 일체의 압박에서 나라를 다시 찾아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건데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국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다면 뭔가…… 물론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마음대로 통제는 안 됐을 겁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사전에 어떤 노력이나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그날 대통령님 경축사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역에서 행사를 했던 부분은 지자체 책임으로 했었는데요.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경축사가 생중계가 안 된단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질차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축사가.

○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오영환 위원 결산 관련인데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진성능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주택, 이런 민간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진성능 평가나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면서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3월에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 마흔네 곳, 2020년에 114곳 그리고 올해 6월까지 56곳, 지금까지 214곳밖에 안 됩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예측했던 숫자보다도 신청이 훨씬 적은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월액, 불용액이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 봤어요. 2017년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 제도가 어찌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조금 더 지진안전 시설물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 같은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19년 대비 계속 발생을 하면서 예산은 68%나 현재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안전부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부처인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포항 지진 발생 당시에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관심을 그만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2019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 절대량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많지는 않지만 2019년, 20년 이렇게 즉 총계를 보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약간은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민간이 굳이 이것을 할 만한 동인이 있느냐, 유인책이 되느냐 부분이 있어서……

○**오영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 측에서 이것을 유도를 하려면,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든지 본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도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이,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국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에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측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유도해서…… 포항 지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언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보다는 더욱더 많은 관심이 중앙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각심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부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쳐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김도읍 위원** 이주민 전 서울청장 지금 뭐 하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청장님이 직접 제청했습니까, 아니면 전임 청장이 제청했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제가 있을 때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도읍 위원** 청장님이 제청하셨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김도읍 위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하실 때 드루킹 댓글 사건 늑장·부실·뒷북 수사로 많은 지탄을 받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많은 훌륭한 분들, 흠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청장님, 왜 하필 그런 지탄을 받았던 이주민 전 청장을 제청하셨어요?

○**경찰청장 김창룡** 산하기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고 또 제청검증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에서 5명 추천하고 그중에서 1명 제외시키고 청장님이…… 2명 제외시키고, 4명 중에 3명을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청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BH에서 오더가 온 겁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자체 제청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복수의 후보군이 있는데 왜 이주민 청장을 제청을 하셨냐고요?

○**경찰청장 김창룡** 제청위원회와……

○**김도읍 위원** 그때 얼마나 시비가 많았습니까?

알아요.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 없고요, 청장님께서 제청하신 최종 명단에 왜 이주민 청장이 들어갔냐고요?

○**경찰청장 김창룡** 전반적인 사항과 제청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대통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주민 청장을 제청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경찰청장 김창룡 교통 분야에서는……

○김도읍 위원 청장님!

드루킹 댓글 사건이,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께서 실형이 확정되셨는데 얼마나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까? 왜 하필 그런 분을 제청을 하시냐고요.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정권 실세의 수사, 늑장·부실 수사 하고 버티다 버티다 퇴임하셨다가 이제 정권 말기 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되는…… 왜 그런 오해 살 일을 하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이주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교통 분야에서는 울산·인천·서울청 근무 시절에 전국……

○김도읍 위원 경찰 출신 중에도 교통 분야 전문가, 흠 없이 열심히 봉직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 김창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천된 네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과 검증위원회 의견을 다 종합 수렴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검증에서 안 걸리냐는 거지요. 왜 오해받을 일을 하셨냐고요.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김도읍 위원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표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8월 5일 날 사표 제출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8월 5일 날 퇴임을 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8월 6일 날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사표 제출한 게 언제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5일이고 6일 날 수리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5일 날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김도읍 위원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차관으로서 범정부 그러니까 부처·지자체 총괄해서 지원하고 또 지자체 백신 예방접종 추진 상황을 총괄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올 7월…… 지금 현재까

지 4차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사표를 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정무직 인사는 여러 요인이 있고요.

○김도읍 위원 그분이 왜 사표를 냈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 인사는 여러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든 아니면 다른 국정운영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고, 김희겸 전 본부장의 경우에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임 이승우 본부장 역시 그동안 재난협력실장으로 코로나 대응 등 굉장히 역할을 잘해 왔고 또 현재 본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에 중대본의 2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전임 또 지금 현재 본부장 모두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그런데 8월 5일 날 사표를 내고 8월 6일 날 퇴임을 했는데요. 바로 그 전에 제가 관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확인을 했어요. 김희겸 본부장이 수원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확인을 했지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바로 퇴임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퇴임을 하면서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가적 위난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홀연히 사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 전례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지난 4월 달에 그 막중한 중책을 대선을 위해서 던져버리고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장관님……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도읍 위원 더 문제는 장관님께서 혹여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취임 당시에 행안부 내에서는 곧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을 이 시기에 왜 저런 중책을 맡기냐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던 거예요. 혹시 장관님 인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김희겸 전 본부장은 재직 중에 소임을 굉장히 잘했고요.

공직자라 하더라도 퇴임 이후에 어떤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막을 수도 없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있을 때 소임을 다하고 나간 이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길을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장관님, 그래서 제가……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여쭙잖아요. 취임 당시에 이미 지방선거 나갈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중책을 맡기냐 이런 게 관가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인지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사실 김희겸 전 본부장의 취임이 제 취임보다 좀 빠릅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제가 취임할 때는 김희겸 전 본부장이 출마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도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서울인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네요. 나중에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제가 서울인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서울이 왜요? 수원.

○**위원장 서영교** 아, 수원.

○**김도읍 위원** 수원이고……

○**위원장 서영교** 알겠습니다. 따로 얘기를……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 답변한 걸 그렇게 시비를 거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서영교** 서울이라고 내가 잘못 들었네요.

○**김도읍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다른 일하고 있더라. 밑에서 핸드폰 보셨어요, 내 질의할 때?

○**위원장 서영교** 김도읍 위원님, 수원이었군요. 내가 서울로 잘못 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경찰청장님한테 묻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가장 잘못 만든 법 상위 3개 법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문체위 통과한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그다음에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들고 싶습니다.

오전에 박완수 위원이 질의한 그 연장입니다. 이번 충북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경찰에서는 간심부를 했겠지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오랫동안 내사를 한 그 결과라 보고 아마 이게 마지막 성과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경찰 현재까지 최초로 보안국장을 두 번 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보안국의 실태를 잘 알고 여러 가지 한계점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사권 폐지가 아니고 경찰에 이관하니까 수사는 계속합니다’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간첩활동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이 정부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가장 좋은 것은 이 법이 개정돼서 정말 전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으로 3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창룡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큰 고뇌하는 것 있나요? 사실 별로 없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아닙니다.

○**김용판 위원** 내년에 바로 마치고 떠나면 되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 다시피 지난해에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저희들은 보안수사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왜 힘드냐면 이런 큰 사건 하려고 그러면 때에 따라 10년, 20년 내사를 해야 돼요. 오류 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하고 경찰같이 승진하고 일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조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런 큰 사건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번 간접단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대공체제를 경찰에서 제대로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라 이걸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돼요. 다른 걸 답변하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판 위원** 그 연장으로 다시 몇 개 더 물어볼게요.

지금은 경찰수사권이 조정돼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3개월 동안 검찰에서 지켜보지요, 살펴보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90일 동안 기록 검토와……

○**김용판 위원** 그게 사실은 일종의 검찰의 감찰입니다. 감찰인데 일선의 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그야말로 눈을 크게 뜨고 엄청나게 까다롭게 살피니까 형사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휘하는 수사간부의 지휘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수사간부의 지휘 능력은 엉터리이고—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검찰의 요구는 까다롭고 해서 수사권 조정된 게 안 된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형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맥락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표 보세요.

이번에 제가 전국 경찰서장의 수사경력을 전부 다 받았어요. 다 받아 보니까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2년 미만으로 나타난 서장들이 한 25.3%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경찰서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수사 역량이 안 된 사람이 경찰서장 갔을 때, 특히 검찰이 앞으로 더욱더 예리하게 여러 가지 경쟁하게 되고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됐으니까 경찰에 대한 기대는 많은 반면에 이런 지휘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파급 영향이 큼니다, 여러 불신도 가고.

그래서 경찰청장께서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제대로 하고 특히 서면지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면지휘가 제대로 실제에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저절로 수사간부들의 수사 역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보면 미미하고, 지난번에 이용구 차관 건도 서면으로 수사 지휘하는 문화가 됐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엉터리…… 경찰청장이 국회 와서 보고도 안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경찰청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줄어들고 또 경찰이 그만큼 사건 취급 건수가 늘어난 데다가 보완수사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 규정에 의해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수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 1건 사건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났다. 특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사심사관이라든지 책임수사지도관,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삼중 통제 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선이 사건 하나 처리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다는 건 저희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 조직 개편은 꾸준히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수사간부들의 수사 지휘 역량이 부족한 점도 저희들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간부들에 대한 지휘·보고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 교육과정까지도 신설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휘, 그다음에 수사 통제 능력은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고 치안정책 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을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김용판 위원** 좋아요. 내가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건 경찰서장 진짜 해먹기 힘들다 그런 말이

나을 정도로 해야 된다. 경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주민의 미소가 밝아지면 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수사 지휘도 서면지휘 쪽으로 계속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율의 이해식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을 당정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든 지방재정의 자주권이라고 그럴까 이걸 신장시켜 주려고 하는 조치인데 대표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두 가지 사업을 꼽으라면 하나는 국가보조금사업이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중에 국가보조금사업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생산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매칭을 요구하는데 특히 복지보조금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양상입니다.

지난번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지방재정전략회의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께서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이것을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첫 아이출산할 때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 5 대 5로 지방비 매칭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영아수당의 경우에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는 것을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늘린다는 그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만남 이용권 6000억 그리고 영아수당, 2025년부터는 매년 1조 2148억 원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단계 재정분권의 순증만 해도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해도 그 순증을 그냥 바로 이렇게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는 지방정부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 행안부에서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통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이런 걸 거쳐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이

후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전된 조치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분권 또 재정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2단계 재정분권 노력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날 참석해서 재정전략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순증 못지않게 보조금 등으로, 매칭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앨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자율성, 순증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진전된 게 있으면 좀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데 이 내용 중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그걸 의원정수 2분의 1 내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준비 중이지만 2022년까지 4분의 1, 2023년에는 2분의 1, 의원정수의.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이런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유사 인력이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 가지고 내년에 거의 대부분의 의회가 1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온당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의회의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꾸준히 요구해 온 보좌관제를 좀 이렇게 절충한 형태의 그런 안이거든요. 말하자면 광역의원한테 혹은 기초의원한테 개인적인 보좌관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정수의 2분의 1 정도 내에서 어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인력을 그렇게 말하자면 부풀려 잡아 가지고 아예 신규 인력을

뽑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얘기한 것보다 상당히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 지금 기존의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 외에 그야말로 입법취지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 2분의 1 내에서 새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1~2주일 안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시행령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그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나서도 물론 의견을 듣지만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기존의 인원을 행안부에서 채용을 하지 마라, 하라고까지 강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임기제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아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거취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좌관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닌 걸로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지만 말고는 또 의회 내에 기초·광역의원분들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나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한 말씀만 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서울이나 부산만 예를 들어도 2023년까지 1명도 안 뽑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전혀 입법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시간이 소진돼도 한 말씀 드리면 짧은 소회입니다. 전에 오후 1시 반, 2시까지 문제위에서 이른바 언론중재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짧은 국회 생활 동안에 날치기를 이렇게 자주 봐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래도 우리 행안위는 모든 발언권도 자유롭게 주어지고…… 여기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도 반대하시는 언론중재법인데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행안위에서만은 정말 위원님들이 다 소신발언 하고 밤을 새서라도 토론하고 의견을 좁혀서 법률안이란 국가 중요 사안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볼…… 현안인데요.

장관님이 지금 재난위의 부위원장님이십니까? 코로나 대책 관련돼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중대본의……

○**김형동 위원** 아, 중대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러니까 중대본부장이 총리고요, 1차장이 복지부장관이고 2차장이 행안부장관입니다.

○**김형동 위원** 요즘 며칠, 수일만에 이른바 보건의료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퇴사, 굳이 이것 안 해도 흔히 말해 생활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 또는 그걸 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적어도 이것을 그냥 본인들의 일이니까 맡겨둬서 되느냐, 아니면 정말 정부가 방역대책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특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상은 기본이고요, 정당한 보상은. 실제 인원 충원에 대한 요구나 재정 투입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경북 안동 같은데 경상북도 도립의료원이 와 있는데 굉장히 재원이 없어서, 특히 투입되는 돈이 없어서 휴직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분들의 고통도 굉장히 큼니다. 간호사 분들 포함한 의료인력의 고충이 정말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하신 대로 처우 개선 내지 인원 확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대기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또 현재에 있어서도 의료인력 확충에 대

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예산하고 인원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근로시간, 노동시간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일선에 계시는 분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안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여기 계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김형동 위원**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늘상 있었던 것인데 작년 국감 때도 나왔습니다.

요즘에 황교익 씨라는 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것도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편성·집행,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한 채용에 대한 문제도 이만큼 불거졌으면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살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다든지 또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관련 조례든 채용규정이든 상위법인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 장관으로서, 개입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문회 등 채용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상황을 잘 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많은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공정한 인사와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부터 시행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부산 남구의 오류도를 품고 있는 남구울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장관님,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안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국회가 잘 안 열려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잘 안 열려서 그런가, 국회 상임위를 자주 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20년,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총 4회의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행안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지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사업 참여 인원을 보면 나름 성과도 거뒀지만 중도 포기한 자가 참 많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중도 포기는 문제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만 저도 확인을 했더니 민간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중도 포기율이 한 20% 정도 돼서……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이 제도 자체의 존재를 볼 정도로, 존재를 판단할 정도로 포기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더 그 사업장 정보를 사전 제공한다든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중도 포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중도 포기 비율은 한 20% 되고요. 젊은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지원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유형을 파악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방에 좀 맞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 원인 찾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박재호 위원 그리고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박재호 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의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사건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박재호 위원 아주 보도를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이 잔혹한 범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건 발생 보름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수용이 되었는데도 스마트워치라는 위치 확인장치가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아서 경찰 신변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맞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재호 위원 7월 4일에는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었고 7월 6일에는 위치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안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담당 부서 간 연락이 메일로, 전화 같은 것이 아니고 직접 또는 전화가 아니고 메일로 주고받았는데 그걸 미처 담당자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하여튼 이 사건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00대인데 다음 달에 1400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박재호 위원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범피기금을 조금 더 많이 확충해 가지고 최고 1만 대까지 이렇게 추가 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스마트워치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서 나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 법무부하고 같이 하는…… 법무부에서 주로 하는 거지요, 그 기금이?

○경찰청장 김창룡 관리 주체는 법무부고 주로 피해자에 대한 이전비 등은 검찰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범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라든지 임시숙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또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구매도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 김창룡 피해자 현장 보호 중에서 이전비 지원 부분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담당하고……

○박재호 위원 스마트워치 구입하는 것은 경찰 자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거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옵니다.

○박재호 위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여태까지 경찰이 너무 적잖아요.

○경찰청장 김창룡 사실은 한 일점몇 %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경찰청에서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피기금의 경찰이관이라든지 또는 비율 확대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범죄피해자를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범피기금의 운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인,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찰청장님,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주지 못했고 메일로 주고받았

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 한 경찰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피해자와의 면담 또는 수사 과정에서 신변보호 요청 여부를 확인하면 그것을 갖다가 청문감사관실 피해자보호담당관한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자보호담당관이 스마트워치를 관리하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후에 다시……

○**위원장 서영교** 그 후에 확보가 됐잖아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했다면 그렇게 결락이 안 됐을 건데……

○**위원장 서영교** 아니, 어떻게 경찰은 그것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 메일로 주고받고…… 그리고 아이는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인이 사건 때도 그랬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성폭행 관련해서 올렸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넘겨 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저희가 자꾸 수도 없이 많으니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요?

○**경찰청장 김창룡** 감찰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아이는 벌써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그 피의자, 범인, 가해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이를 해치겠다고 하는 징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엄마 보호만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몇 번에 걸쳐 경찰에 가서 신고도 하고 진술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가 사람을 살렸을지 안 살렸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경찰은 진짜 완전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청장님, 정신을 좀 바짝 차려 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편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이 가서 진술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스마트워치 하나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 스마트워치만 쫓으면 그 위치가 파악되면서 어쩌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강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 모습이 다른 데서 또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영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도 또 그런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 통계도 좀 내보시고, 경찰청장님이 계실 때 자치경찰제 되면서 경찰이 강화되었는데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이미 제도는 시행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차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여러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3분으로 하고, 박완수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박완수 위원** 결산서 보면 세목 변경이 261건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선관위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선관위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편성 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목 조정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집행 과정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세목 조정……

○**박완수 위원** 작년은 그렇다 해도 금년에 국감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267개 기관으로 분리돼서 집행을 또 선거 때는 단기간에 집행하다 보니까……

○**박완수 위원** 기관이 많다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때마다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19년부터 지금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요……

○박완수 위원 총장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

조해주 상임위원 유임이 이제 된 겁니까? 사표 반려가 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예, 사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청와대에서 반려시킨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러면 낼 때 청와대 요구에 의해서 냈습니까,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낸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표를 낸 것, 그다음에 반려된 것 그 사실만 알고요.

○박완수 위원 아니, 행정적 처리는 사무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직접 임명권자한테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총장님 다 거쳐서 내는 건데……

그러면 자의에 의해서 낸 것이고 이제 청와대에서 반려했기 때문에 유임이…… 임기까지 다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세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장관님, 재난지원금 국고보조율이 서울 빼고는 지금 80%지요? 80%인데 지방비 부담이 약 2조 1295억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께서 88%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같은 데는 국고보조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똑같이 이렇게 서울 빼고 80%를 하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하지만 다른 시도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거 보조율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 조정은 사실 쉽지 않고요. 다만 이번 추경 때도 그랬지만 교부세에 있어서는 불교부단체, 재정이 괜찮은 경우는 불

교부단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이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피해자 보호 관련된 호된 지적이 계셨는데 내부적으로 피해자 보호 부서 소속이 감사관실 그리고 일선은 청문감사관실로 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사실 자치경찰하고도 그렇고 지금 국가수사본부하고도 그렇고 조금 유기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저희들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은 112신고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112신고자보호법이 없어요. 범죄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제3자일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 관련 의 단초가 112신고인데 정작 112신고자보호법을 경찰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심각하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 없는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임호선 위원 오전 질의 때 제가 자살 경찰관 1년에 24명 말씀드렸는데 그게 소방하고 해경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다 그렇게 쏟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자살자, 자살하신 동료 경찰관 분들이 한 분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별을 못 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창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방이나 해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지고 예산 부담이 좀 덜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성검사를…… 직무적성검사를 한 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음동행센터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임호선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러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그렇지 않나,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지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범죄가 3년 전보다 한 10만 건이 늘었어요. 13만 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만 건이 됐는데, 지금 수사인력도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사. 그리고 피해금액도 그만큼 또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범죄는 한 5% 정도 증가했지만 사이버범죄는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안부 등의 지원으로 인력도 한 30% 넘게 증원이 되었지만 폭증하는 사이버범죄를 따라 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등 영향으로 사이버범죄가 한 10만 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수법도 지금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또 암호화된 보안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래서 상당히 치밀하게 되고 조직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데, 추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수기법이라든지 장비도 도입하고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력, 예산, 조직, 장비 그 부분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위원장 서영교**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차례인데……

○**서범수 위원** 낙장불입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서영교**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은주 위원**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 한번 봐주세요.

최근 행안부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리기 위해서 제작한 포스터가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수정하고 온라인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다음 포스터 보시지요.

수정 전 포스터입니다. 장관님, 저 포스터 주인공 손가락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읽히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당시에 이와 같은 포스터를 게재한 이후에 사회적 논란이 돼서 그것을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사회적인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남성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데 왜 그걸 혐오라고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과까지 하고 그랬는지, 실제로 남성 혐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은 특정 성별 사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일 뿐입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 애초에 인천지하철이 게시한 이 포스터에 남성 혐오 혐의를 제기한 그 커뮤니티와 동일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저 손가락의 모양이 남성 혐오 상징인데 홍보물 제작자들이 이를 은밀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은주 위원** 논란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문제 제기를 하니깐 그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거지……

○**이은주 위원** 유감 정도가 아니라 수정을 하신 거예요, 사과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러니까 유감을……

○**이은주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논란을 빚대 보면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가 쏜 커트를 하고 특정한 말을 본인의 SNS에서 사용해서 페미니스트가 분명하니 사과해라 요구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안산 선수 또 양궁협회 사과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논란과 관련해서 외신들은 이 건 온라인 학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오른쪽 보시지요.

지난 5월 GS편의점 포스터도 똑같은 논란에 처했고 결국은 기업이 사과하고 디자이너는 징계되고 마케팅팀장은 보직해임까지 당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사냥하겠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피해자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경찰청장님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홍보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이 경찰청도 수정을 했습니다.

행안부나 경찰은 이런 온라인상의 행태와 학대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해서 사과하고 수정하고, 이런 비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논란이 안 될 일을 논란으로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나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행안부가 부당한 사과를 철회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됐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는 것 가지고 수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2018년에 만들었던 포스터에 대해서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이은주 위원**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송구’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 당시에 보면 사과라기보다도 정확하게는 ‘송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드린 대로 송구라는 게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송구하다는 것이 아니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논란을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실무자가 수정한 걸로 알고, 이전 사례처럼 책임을 지고 또는 책임자를 문책을 하고 등등을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결국 정부가 그렇게 봤으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직해임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서범수 위원** 지금 시·도경찰청장 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시·도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청장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서범수 위원** 그 절차 안 거치면 위법이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입니다.

○**서범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같은 경우에 인사발령이 7월 7일 날 났습니다. 그런데 회신은 7월 9일 날 왔어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날 발령했는데 아예 회신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북부청, 강원도, 충남도청…… 충청남도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7월 9일인데 7월 9일 날 회신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저것은 공문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것이고……

○**서범수 위원** 행정이 공문으로 하지요.

○**경찰청장 김창룡**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라고요?

○**경찰청장 김창룡** 협의 절차에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결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메일이 라든지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서범수 위원** 대한민국 행정이 구두로 하네요, 그렇지요? 공문서 없어도 되는 거네요? 전화로 합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일단 그게 협의의……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오해를 받도록 합니까? 엄연히 절차가 있는데……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의결이 됐으면 의결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부 절차를 거쳐서……

○**서범수 위원** 대한민국 행정이 언제부터 전화로 다 모든 게 통용이 돼요?

○**경찰청장 김창룡**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결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가요?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결을 한 겁니다. 그 의결하는 자체로서 바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범수 위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따져 볼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은 전화로 해도 되고 공문서 없이 해도 되네요?

○**경찰청장 김창룡** 아니, 저희들이……

○**서범수 위원**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청장 김창룡** 그 위원회의 의사를 확인해서 그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추천하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의사를 확인해서 공문서가 와야지요, 공문서가.

○**경찰청장 김창룡**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어떤 절차 부분도……

○**서범수 위원** 공무수행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 협의 요청도 구두로 했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추천 협의할 때에는 상당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많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나중에 따집니다.

지난 5월 12일 날 행안위에서 청장님께 제가 일선 직원들, 직장협의회 분들과하고 소통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 지난 6월 11일 날 직협 출범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청장께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나름대로 우리 직협회장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요구하는 거라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면 다음 추가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원래 다음 없습니다. 1분 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때 직원들 이야기는 한 시간쯤 하셨대요, 청장님께서.

○**경찰청장 김창룡** 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대부분의 시간을 경찰청장이 할애를 하고 직장협의회 대표들한테는 한 여섯 사람에게 대해서 3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말았다. 이게 무슨 대화냐, 간담회냐, 훈시고 교육이지,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경찰청장 김창룡**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찰청장 김창룡** 여섯 명 정도가 아니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40명이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의사전달용 피켓을 든 직장대표의 화상캠 화면을 저렇게 차단을 해요, 또. 보기 싫다 이거지.

○**경찰청장 김창룡** 저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본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서범수 위원** 본인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경찰청장 김창룡** 회의를 아예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제가 청장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진정성 있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경찰청이 너무 고압적으로, 너무 권위적으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연합회를 구성해 달라고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늘 그

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조차 간담회를 안 하니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하여튼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직장협의회 필요성이라든지 직장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등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위 말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든지 지역별로 거점별 간담회를 하든지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협과 경찰청이 서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양 날개, 양 축으로서 경찰 발전을 이끌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계속……

○서범수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니까요, 청장님.

나중에 내가 대질신문 할게요, 그러면.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으시고요. 중이나 이런 걸로도 좀 더 해서 저희들한테 성과도 좀 알려 주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의정부시를 김민철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안전수사 활동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사기 그리고 랜섬웨어 그런 사이버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만 건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청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면 특히 사이버 사기 이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사이버 금융범죄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사이에 3.3배 정도 늘어나고 전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그리고 검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빨갛게 돼 있지요? 금융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쪽 하나 그리고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21%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이 44억 한 8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한 3억 8400만 원 정도를 지금 불용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한 3억 8000 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김민철 위원 3억 8900만 원 정도.

○경찰청장 김창룡 예, 3억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해외하고 다양하게 출장이라든지 교류 등을 위해서 해외출장 같은 그런 여비성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집행할 못 했습니다.

○김민철 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아까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전용을 너무 많이 해서 제대로 세우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골고루 다 조금씩 남겨 뒀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국제협력 공조수사 예산을 한 3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겨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저는 좀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저희들이 베트남 현지 같은 경우…… 요즘은 주로 출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현지에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서 신병을 인도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민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예산이 남았으면 다른 사이버범죄 활동 예산에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예방 활동이라도 더 하든지 이걸 다 적극 행정으로 써서 예산을 소진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이쪽에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 규정상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넓지 않은 점을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철 위원** 예산을 끌고루 다 남겨 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김도읍 위원** 그걸 또 확인을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계시는데…… 김용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용환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제주시를 오영훈 위원입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장님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해철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제시됐는데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중도 포기 탈락자가 공공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25%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인원을 좀 충분하게 뽑아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1·2회차의…… 회차 수를 늘려서 또 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비율 자체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유의해서 중도 탈락률을 저하시켜야 되고요. 지금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실제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이라든지 데이터 관련 전문교육 강화라든지 예비인력 추가 선발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거사 배·보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사 관련 사업들을 즉 확인해 보니까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사업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사업 이 내용들이 대부분 예산이 좀 모자라서 전용을 받아서 배·보상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요. 대구 2·28 민주화운동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도 이·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관련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전용 이유를 봤더니 한 부분은 부마항쟁의 경우는 보상 건수가 4배 이상 늘었고요. 5·18 같은데 소송 결과에 의해서…… 사실 보상 건수는 좀 더 예측하고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준비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지 않고요.

다만 소송 같은 경우는 종료라든지 그 결과를 워낙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아무튼 좀 더 예측해서 전용이 아니라 미리 예산 확보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요. 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개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향후에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3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속 입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4·3건 관련해서는 위원님 등 노력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돼서 사실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

준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 올해 예산을 특정된 액수든 아니면 확보된 액수든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3개년에 걸쳐서든 5개년에 걸쳐서든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1차년도가 2022년도가 되어야 한나라는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님께 나와 주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예.

○오영훈 위원 4·3 특별법이 2월 달에 통과가 됐고 그 핵심 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보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고 그리고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법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단한 진전을 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향후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금 나와 계신 행안부장관님 하고 지지난주에 그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로 배·보상 문제의 입법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배·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공론화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가을에는 좀 더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배·보상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예.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장관님께 두 가지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금은 대충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김용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6298억 원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전국적으로 9조 5642억 원, 엄청납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건 국비지원 배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구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위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인데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를 좀 예를 듭니다. 대구가 인구로는 순위가 7번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은 13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광주에 인구는 13위인데 희한하게도 배분은 7위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이런 지역…… 사실은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배분 기준이라는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장관님 오시기 전이지요. 주로 배분된 것이 이런 것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구도 신경 좀 써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수요에 의해서 국비를 반영하는데 그 수요가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작년 중반기에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서 하고 나서 몇 가지 반영 비율, 반영 요소가 판매실적, 인구수, 특수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 등이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부분을 좀 더 많은 비율로 차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게 가장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인구 기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주제로 이것은 늘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위원회가 너무 많지요, 장관님 생각에도?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개척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2018년도에 78개, 2020년 65개 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기획위원회는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김용판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인데 여기의 작년 사업 예산 쓴 걸 보면 예산 중의 52.1%는 전부 다 식대로 썼어요, 식대로. 그리고 한 내용도 실적이라고 보면 국정과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적 추진 지원,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 없는 그런 기관은 확 정리 정돈하시지요. 그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일단 정책기획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시에 그 활동이 종료되는 것을 국회에 이미 보고를 해 가지고요. 필요한 종료 사항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사비 부분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했더니 간담회 등으로 소요된 경비가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께.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시다마는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의 마음 관리, 특히 소방구급대원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소방청장 신열우 예,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상 활용 인력을 129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소방정원만 해도 6만 2000명이고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PTSD 고위험군이 2600명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는 불과 1290명인데 사실 실제로 이용한 이용률을 보면 8%밖에 안 돼요, 예산 집행률이. 그렇지요?

○소방청장 신열우 예,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결산하고 관계된 건데 마침 또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센터와 그리고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3381명의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구급대원의 경우에 ‘우울증상이 있다’ 이렇게 물었더니 무려 49.8%가 ‘우울증상이 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번아웃을 느끼느냐’, 69.4%가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들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 상태라 그럴까 이런 것을 잘 알게 하는 조사인데, 정작 우리 소방청에서는 예산을 잡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부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방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소방청장 신열우 사실 특히 코로나19로 작년·올해, 서울·경기 구급대원들의 피로도나 우울증이 한계점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사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다 소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 전염 때문에 대면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또 실제로 구급대원 가족들 워크숍을 하다가 확진자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고가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국비 50, 지방비 50해 가지고 13억 원입니다. 지방별로, 시도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비대면을 확대하고 대면도 방역수칙을 하고 30명 정도로 끊어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를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말미에 보면 마음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소방청장님께서 특별히 구급대원들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해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영교**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장관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3·4차 추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편성이 되고 집행된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4차 때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확인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회 추경도 그랬고 4회 추경도 그렇고 각 시도별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PPT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장관님 살펴보시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편성을 해도 집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달라는 데는 굳이 안 주고 다 쓰지 못하는 지역에 또 편성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른바 추경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다시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런 예산이 더 편성되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번엔 결산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세종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실집행률이 거의 46%, 57%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88%, 7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위에 랭크돼 있는 실제 필요한 그런 지역에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시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더 요구하는 쪽으로 과감히 편

성을 해 주는 것이, 그런 지역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이른바 희망일자리사업 취지에 맞지 않겠는 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답변할까요?

○**김형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올해 할 때는 많이 반영해서 실제로 채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것 한번…… 제 말씀은 지역별로 실제 자기들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큼 소진한 지역이 있고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못 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예산 계획을 정직하게 집행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현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식 스팀세차 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발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마는 인명 사고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정말 큰 주상복합이든 상가건물이든, 지금도 천안에 아파트입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소방 관련된 법률에 스팀세차기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요. 장관님 살펴보셨습니까?

○**소방청장 신열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형동 위원** 장관님께 여쭙보는 겁니다.

○**소방청장 신열우**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가 굉장히 피해 규모도 크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지고 잘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 가니까 발언 기회 자꾸 주더라고요.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으니 1분 더 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송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 가지고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과연 그런 게 일어날까 했는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기도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벤츠도 있고 차가 좋은 게 많은데 만약에 인명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이 차량을 다 바꾸고도 인명에 대한 교환가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견치 못한 장소에서 예견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저도 가끔 이용해 봤습니다만 이동식 스텝세차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조건이라 그럴까, 영업허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고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면밀히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소방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소방청장 신열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관장 부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 산업부나 소방이나 환경 쪽에…… 일반세차장 고정시설은 환경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소관부처가 먼저 나와야 이걸 갖다가…… 이게 LPG탱크가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안전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소방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호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요. 예산 중에 경찰 또는 소방관 관련해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보호하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못했다고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잘 살펴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신열우** 예.

○**위원장 서영교** 누구나 다 겪는 업무인데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얼마 전 이 자리에서…… 강한얼이라고 했던 소방관, 그 소방관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다 똑같이 일하는 건데 왜 너만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라고 하니까 사실은 눈치가 보여서 가서 치료를 받을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단한 업무를 하는 분들은 매일 밤 자기가 구하지 못한 화마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왜 너만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소중한 우리 공무원들 다치지 않고 국민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6개 부처의 장관님과 청장님들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현장의 얘기들을 또한 전달해 주는 소중한 말씀이었는데요. 잘 들으신 내용을 다시 부처에서 실현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질의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제12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영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부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님, 인사혁신처 처장님, 경찰청장님과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안위, 국회방송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도읍	김민철	김용판	김형동
박완수	박완주	박재호	백혜련
서범수	서영교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명수	이영	이은주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최춘식
한병도			

○청가 위원(1인)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박규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경찰청장	김창룡
소방청장	신열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김세환
------	-----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영세	김도읍	국민의힘	2021.6.21.
김민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2021.6.22.
윤영덕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2021.6.25.

○의안 회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6. 11. 전혜숙·강병원·김종민·서영교·박광온·이원욱·최인호·오영훈·양기대·

안규백·이용빈·오영환 의원 발의)

6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6. 14. 권성동·엄태영·김선교·안병길·전봉민·정운천·권명호·태영호·정진석·한무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6. 14. 서영교·김민철·김영호·민병덕·서삼석·오영환·이용우·이해식·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이종성·김영식·이종배·서일준·김용판·강기윤·정찬민·정운천·김예지·안병길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신정훈·윤재갑·김정호·신영대·김원이·김영호·박성준·김두관·소병훈·이해식·전용기·서영교·김경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홍성국·강선우·강준현·김성주·민병덕·양기대·윤영찬·이개호·이낙연·정일영·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구자근·곽상도·권명호·김영식·김예지·김형동·신원식·양금희·지성호·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7일 회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권명호·정희용·최형두·강민국·태영호·김용판·이종성·김정재·안병길·엄태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이영·金炳旭·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형동·양금희·유경준·윤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8일 회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추경호·강기윤·김석기·김예지·김용판·박성중·이종배·이채익·임이자·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예지·박덕흠·서병수·양금희·이채익·전주혜·조수진·태영호·홍준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김성원·이종배·김정재·김승수·박대출·윤상현·김용관·최준식·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양수·최형두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김민철·오영환·고용진·임오경·민형배·한준호·김철민·어기구·최종윤·김홍걸·서영교·김경만·유정주·민홍철·이동주·윤준병·이장섭 의원 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김영배·김두관·김민석·김성환·민형배·박성민·양정숙·오영환·이동주·이병훈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이만희·김선교·권명호·박덕흠·이명수·윤한홍·김석기·이용·김태흠·박형수·이양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설훈·강병원·김영배·송영길·양정숙·양이원영·윤재갑·이규민·전혜숙·정정순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21일 회부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한병도·강준현·김민철·김승원·맹성규·민병덕·박홍근·서영교·양기대·양정숙·오영환·윤건영·윤영찬·윤준병·이광재·이명수·이수진·이수진(비)·이용호·임호선·장경태·최종윤·허영 의원 발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한병도·김수홍·김원이·김윤덕·신영대·신정훈·오영환·오영훈·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용빈·이형석·임호선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김석기·金炳旭·김선교·김정재·서일준·송언석·정진석·추경호·한무경·홍석준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윤준병·강득구·오영환·임종성·이용빈·문진석·김수홍·강병원·정일영·이수진(비)·양정숙·김병기 의원 발의)

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어기구·김민철·김정호·김진표·윤건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우·주철현·허종식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전재수·이장섭·양정숙·유정주·신영대·김정호·고영인·전용기·이병훈·민홍철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백혜련·김남국·김원이·남인순·서동용·송옥주·안민석·오영환·이성만·정성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정일영·김교홍·김주영·노웅래·민형배·소병철·양정숙·우원식·윤준병·윤후덕·이수진(비)·이용우·이해식·허종식·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8건 6월 22일 회부됨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이장섭·강훈식·김민석·김민철·송갑석·양정숙·윤영찬·이학영·인재근·임호선·전재수·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김철민·오영환·이정문·민형배·서동용·안민석·이병훈·권인숙·박상혁·유기홍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강기윤·최형두·김태호·김희국·윤영석·이종성·구자근·권명호·박성중·김희곤 의원 발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강기윤·최형두·김태호·김희국·윤영석·이종성·구자근·박완수·권명호·박성중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김용관·유경준·송언석·강대식·김성원·이종성·박덕흠·권명호·박대수·윤재옥·추경호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서일준·김태흠·조해진·하영제·지성호·정점식·김형동·양금희·한무경·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23일 회부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이형석·송갑석·김승남·조오섭·문진석·이정문·이용빈·윤영덕·양기대·한병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이형석·김윤덕·조오섭·송갑석·백혜련·안호영·이해식·유정주·윤관석·이병훈·문진석·박성준·이규민·남인순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4일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서삼석·김승남·김승원·김철민·맹성규·민형배·박정·송갑석·양기대·오영환·위성곤·이병훈·이상현·이성만·전용기·조오섭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박완수·김성원·조경태·강기윤·하영제·최형두·이달곤·양금희·강대식·백종현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오영훈·김민철·김병주·김승원·박성준·안규백·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전재수·김병주·김정호·맹성규·박재호·송기현·신현영·윤준병·이광재·장철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전봉민·김도읍·김희곤·백종현·서범수·서일준·안병길·양금희·정동만·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5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박홍근·홍익표·양향자·김원이·양기대·조오섭·기동민·정춘숙·박성준·민병덕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조오섭·양향자·송갑석·문진석·윤영덕·최종윤·주철현·소병훈·민형배·이용빈·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송석준·박덕흠·배준영·유경준·유상범·윤창현·이종배·정찬민·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김병기·김진표·소병철·오영환·이정문·윤준병·조승래·문진석·신영대·도종환·박성준·최인호·안민석·김영배·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회부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백혜련·박성준·남인순·서영교·소병철·소병훈·송옥주·오영환·유정주·윤관석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임호선·김성주·김영배·오영환·오영훈·이수진·이장섭·이해식·정태호·허영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이해식·노웅래·서영석·안규백·위성곤·이명수·인재근·임호선·정일영·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이해식 · 노웅래 · 서영석 · 안규백 · 위성곤 · 이명수 · 인재근 · 임호선 · 정일영 · 한병도 · 홍성국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이해식 · 김민철 · 김승남 · 남인순 · 노웅래 · 서영석 · 안규백 · 오영환 · 위성곤 · 윤재갑 · 이개호 · 이낙연 · 인재근 · 전해숙 · 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30일 회부됨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6. 30. 정부 제출)

7월 1일 회부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7. 1.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오영훈 · 강득구 · 강준현 · 박광온 · 서영교 · 송재호 · 양이원영 · 양정숙 · 용혜인 · 이병훈 · 이성만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천준호 · 김윤덕 · 김정호 · 김진표 · 문정복 · 민병덕 · 박홍근 · 신동근 · 신영대 · 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회부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백혜련 · 김남국 · 김병욱 · 김승원 · 김윤덕 · 김홍걸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박성준 · 서영석 · 소병훈 · 양이원영 · 오영환 · 윤후덕 · 이학영 · 이해식 · 임종성 · 전용기 · 정성호 · 정정순 · 주철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백혜련 · 김남국 · 김병욱 · 김승원 · 김윤덕 · 김홍걸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박성준 · 서영석 · 소병훈 · 양이원영 · 오영환 · 윤후덕 · 이학영 · 이해식 · 임종성 · 전용기 · 정성호 · 정정순 · 주철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김민기 · 강득구 · 강준현 · 유정주 · 이용호 · 이형석 · 이용호 · 인재근 · 임호선 ·

홍익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이명수 · 이종성 · 김예지 · 조해진 · 김형동 · 김병욱 · 지성호 · 최춘식 · 인재근 · 박성중 · 윤창현 · 이해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구자근 · 강기윤 · 권명호 · 김석기 · 김선교 · 김영식 · 김예지 · 박성민 · 윤두현 · 임이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김예지 · 강기윤 · 강대식 · 김미애 · 김炳旭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승수 · 김영식 · 김웅 · 박대출 · 박성민 · 박수영 · 박형수 · 백종현 · 서범수 · 서일준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양금희 · 오영환 · 유상범 · 윤두현 · 윤희숙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영 · 이용 · 이종성 · 이채익 · 정찬민 · 조명희 · 조수진 · 조태용 · 최춘식 · 추경호 · 한기호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5일 회부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서범수 · 구자근 · 권성동 · 김희곤 · 박덕흠 · 박성민 · 엄태영 · 윤주경 · 전봉민 · 정운천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백혜련 · 김남국 · 김병욱 · 김승원 · 김윤덕 · 김홍걸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박성준 · 서영석 · 소병훈 · 양이원영 · 오영환 · 윤후덕 · 이학영 · 이해식 · 임종성 · 전용기 · 정성호 · 정정순 · 주철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이재정 · 강득구 · 강민정 · 김남국 · 김병욱 · 남인순 · 민병덕 · 박성준 · 오영환 · 이형석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엄태영 · 권명호 · 김태호 · 김희곤 · 박덕흠 · 박대수 · 박성민 · 임이자 · 정찬민 · 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오영훈 · 김승남 · 김의겸 · 김희재 · 남인순 · 서영교 · 양정숙 · 이규민 · 정청래 · 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김홍걸 · 김경만 · 서동용 · 안민석 · 양정숙 · 오영환 · 이용선 · 이학영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6일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6. 김교홍 · 강준현 · 강훈식 · 고용진 · 문정복 · 박영순 · 윤관석 · 이성만 · 장경태 · 정일영 · 허종식 의원 발의)

7월 7일 회부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6. 서병수 · 김기현 · 김예지 · 김태호 · 김태흠 · 류성걸 · 박수영 · 배준영 · 양금희 · 유경준 · 윤두현 · 윤주경 · 이영 · 이주환 · 장혜영 · 전주혜 · 정동만 · 조수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7. 6. 강준현 · 강선우 · 김민기 · 김병기 · 맹성규 · 백혜련 · 안규백 · 이성만 · 이형석 · 정청래 · 홍성국 의원 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정점식 · 박덕흠 · 성일종 · 이용 · 김용환 · 조수진 · 박대출 · 유경준 · 임이자 · 지성호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이병훈 · 김승원 · 서영교 · 양향자 · 오영환 · 이성만 · 전제수 · 정청래 · 주철현 · 홍성국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백혜련 · 김병욱 · 남인순 · 박성준 · 서영교 · 소병훈 · 오영환 · 이수진(비) · 이은주 · 이형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8일 회부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민형배 · 김병욱 · 김승원 · 김철민 · 김홍걸 · 문정복 · 민병덕 · 박상혁 · 백혜련 · 송갑석 · 신정훈 · 이규민 · 조오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이성만 · 강훈식 · 권인숙 · 송갑석 · 신정훈 · 이수진 · 송옥주 · 송영길 · 박정 · 유동수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박완수 · 김용환 · 구자근 · 최형두 · 서범수 · 최준식 · 권영세 · 조경태 · 김태호 · 홍석준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박완수 · 김용환 · 이명수 · 구자근 · 최형두 · 서범수 · 최준식 · 권영세 · 조경태 · 김태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류성걸 · 김은혜 · 金炳旭 · 정운천 · 박덕흠 · 김예지 · 주호영 · 강대식 · 박대수 · 이채익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류성걸 · 김은혜 · 金炳旭 · 정운천 · 박덕흠 · 김예지 · 주호영 · 강대식 · 박대수 · 이채익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변재일 · 인재근 · 이정문 · 도종환 · 서영석 · 이장섭 · 임호선 · 정정순 · 양경숙 · 권칠승 · 강훈식 · 권인숙 · 장철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변재일 · 인재근 · 이정문 · 도종환 · 서영석 · 이장섭 · 임호선 · 정정순 · 양경숙 · 권칠승 · 강훈식 · 권인숙 · 장철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김홍걸 · 김경만 · 김교홍 · 김민철 · 김수홍 · 양기대 · 오영환 · 이규민 · 이학영 · 한준호 의원 발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김영식 · 강대식 · 권명호 · 김도읍 · 김선교 · 김용환 · 김정재 · 박대수 · 박성민 · 이양수 · 이영 · 이주환 · 전주혜 · 최승재 · 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1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정경희 · 정찬민 · 박대출 · 윤재옥 ·

황보승희 · 박성민 · 하영제 · 강민국 · 이양수 · 유상범 · 조수진 · 김영식 · 권명호 · 엄태영 · 서병수 · 박대수 · 조태용 · 윤희숙 · 이영 · 강대식 · 홍석준 · 박진 · 김예지 · 이만희 · 김미애 · 이철규 · 이달곤 · 최춘식 · 서정숙 · 송석준 · 한무경 · 김석기 · 김성원 · 서범수 · 윤창현 · 조명희 · 이현승 · 김상훈 · 최승재 · 이명수 · 이종성 · 양금희 · 최형두 · 백종현 · 김선교 · 성일종 · 김도읍 · 배준영 · 권영세 · 전주혜 · 윤두현 · 배현진 · 서일준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정경희 · 강대식 · 강민국 · 권명호 · 권영세 · 김도읍 · 김미애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영식 · 김예지 · 박대수 · 박대출 · 박성민 · 박진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현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 양금희 · 엄태영 · 유상범 · 윤두현 · 윤재옥 · 윤창현 · 윤희숙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영 · 이종성 · 이철규 · 이현승 · 전주혜 · 정찬민 · 조명희 · 조수진 · 조태용 · 최승재 · 최춘식 · 최형두 · 하영제 · 한무경 · 홍석준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윤준병 · 오영환 · 이용우 · 민형배 · 안호영 · 송옥주 · 양이원영 · 정일영 · 이수진(비) · 임종성 의원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윤준병 · 오영환 · 이용우 · 안호영 · 양이원영 · 임종성 · 정일영 · 민형배 · 송옥주 · 이수진(비)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윤준병 · 오영환 · 이용우 · 민형배 · 안호영 · 송옥주 · 양이원영 · 정일영 · 이수진(비) · 임종성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7. 13. 김승남 · 김영배 · 유정주 · 송재호 · 신정훈 · 이개호 · 박성준 · 기동민 · 윤재갑 · 이수진(비) · 윤준병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13. 양정숙 · 이규민 · 윤준병 · 안호영 · 김성주 · 심상정 · 조오섭 · 소병훈 · 위성곤 · 윤재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7. 13. 이종성 · 백종현 · 강기윤 · 강민국 · 김용관 · 박대수 · 윤한홍 · 임이자 · 김형동 · 김태호 · 조명희 · 이명수 · 최형두 · 박대출 · 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7월 14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김교홍 · 강득구 · 강준현 · 김수홍 · 문정복 · 조웅천 · 윤관석 · 윤준병 · 이성만 · 박상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한병도 · 강민정 · 김민철 · 김성주 · 김승원 · 서영교 · 오영환 · 윤준병 · 이용빈 · 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5일 회부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오영훈 · 양정숙 · 조오섭 · 이규민 · 김승남 · 김홍걸 · 이해식 · 오영환 · 이용빈 · 고영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김용관 · 박덕흠 · 김예지 · 박대수 · 조명희 · 이종성 · 구자근 · 송언석 · 윤창현 · 강대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6일 회부됨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윤희숙 · 김희국 · 유경준 · 박상도 · 박대수 · 전주혜 · 신원식 · 김미애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윤희숙 · 김희국 · 유경준 · 박상도 · 박대수 · 전주혜 · 신원식 · 김미애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윤희숙 · 김희국 · 유경준 · 박상도 · 박대수 · 전주혜 · 신원식 · 김미애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박대수 · 김희국 · 전주혜 · 김미애 · 신원식 · 박상도 · 유경준 · 윤희숙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허은아·윤희숙·김희국·
유경준·곽상도·박대수·전주혜·신원식·
김미애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서범수·구자근·김희곤·박덕흠·
박완수·최형두·엄태영·오영환·이채익·
전봉민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19일 회부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오영환·김민철·서영교·한준호·
이병훈·박재호·임오경·전용기·윤준병·
이은주·문정복·장철민 의원 발의)

7월 20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김철민·고영인·권인숙·김민철·
민형배·박상혁·서동용·안민석·유동수·
이병훈·이원욱·이정문·조웅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소병철·김승남·김정호·김종민·
김진표·류호정·박성준·송재호·양정숙·
장철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소병훈·고영인·김승남·김승원·
서영교·송재호·신정훈·안규백·양정숙·
윤관석·윤준병·이성만·인재근·홍정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유기홍·서영교·안민석·윤영덕·
조오섭·권인숙·임호선·김철민·유정주·
서동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유기홍·서동용·김철민·박찬대·
안민석·조오섭·권인숙·서영교·윤영덕·
유정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21일 회부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
발의)

(2021. 7. 21. 김용관·오영환·권명호·박대수·
박덕흠·추경호·송언석·김예지·김성원·
조명희·이종성·유경준·구자근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김민철·김성주·김철민·김홍걸·
노웅래·민형배·송재호·양정숙·오영환·
장철민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aggi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이만희·윤한홍·김석기·김선교·
박덕흠·이명수·김태흠·이용·이양수·
권명호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21. 7. 21. 서병수·서일준·정경희·홍문표·
류성걸·전봉민·김형동·조경태·윤창현·
양금희·최형두·김은혜·구자근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이해식·강병원·김승남·김영배·
김정호·백혜련·신동근·위성곤·인재근·
전재수·정일영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서병수·구자근·김형동·류성걸·
박성민·서일준·양금희·윤창현·전봉민·
정경희·조경태·홍문표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이해식·김승남·김영배·서영석·
안규백·위성곤·이형석·인재근·전재수·
정일영·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7건 7월 22일 회부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2021. 7. 22. 이형석·홍익표·전용기·이탄희·
조오섭·송갑석·김승남·이정문·백혜련·
윤영덕·문진석·이해식·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2021. 7. 22. 이형석·홍익표·전용기·이탄희·
조오섭·송갑석·김승남·이정문·윤영덕·
문진석·이해식·한병도·백혜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

(2021. 7. 22. 정희용·金炳旭·김희곤·박성민·
서병수·송재호·이채익·정진석·최춘식·
태영호·한무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김용관·하영제·정희용·김예지·박덕흠·박대수·서일준·이종성·추경호·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장경태·김원이·김의겸·민형배·송옥주·오영환·유정주·이은주·장철민·전용기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신정훈·이상현·이원택·김진표·이성만·홍정민·이장섭·김승남·서영교·유정주·윤재갑·윤준병·민형배·김원이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이현승·전봉민·임이자·이주환·박성민·김미애·조해진·이양수·김도읍·김승수·김정재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서병수·구자근·류성걸·서일준·양금희·윤영석·이명수·이주환·전봉민·조경태·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6일 회부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정운천·金炳旭·조경태·전봉민·구자근·황보승희·이채익·이종성·류성걸·김태호·양금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양경숙·김수홍·김승남·남인순·박찬대·백혜련·변재일·신정훈·윤관석·정청래·최종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백혜련·이해식·오영환·남인순·김남국·박성준·이형석·이성만·임호선·이원택·이동주·서동용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이규민·문정복·민형배·송갑석·이성만·이수진(비)·이수진·임오경·장경태·

정청래·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7일 회부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홍성국·강선우·강준현·민병덕·송재호·양기대·오영훈·이개호·이병훈·전용기·정일영·홍익표 의원 발의)

7월 2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이은주·장혜영·배진교·심상정·김민철·김병주·임종성·오영환·임오경·강은미·류호정·김경협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문진석·김민철·이형석·송갑석·안민석·서영석·이정문·이용빈·홍익표·이규민·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엄태영·김희곤·박덕흠·박대수·정찬민·이채익·정운천·홍문표·김성원·조명희·서범수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이형석·이병훈·이해식·안규백·문진석·민형배·양기대·이성만·홍익표·임호선·이수진·한준호·노웅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이종배·조수진·金炳旭·김승수·윤영석·태영호·곽상도·김선교·지성호·박덕흠 의원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김성원·배현진·이용·최형두·윤상현·김용관·박대수·이종배·정운천·권성동·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김성원·배현진·이용·최형두·윤상현·이종배·정운천·권성동·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김성원·배현진·이용·최형두·윤상현·박대수·이종배·정운천·권성동·최춘식·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30일 회부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김성원·김용환·김태호·박대수·서일준·이영·이종배·정진석·조명희·최춘식·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박완수·권영세·김용환·김태호·김성원·태영호·강기윤·조경태·백종현·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박완수·권영세·김용환·김태호·이종배·태영호·강기윤·조경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송재호·김민철·소병훈·민형배·김영배·정청래·이성만·류호정·김승남·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일 회부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김두관·김한정·김민철·진성준·전재수·신정훈·오영환·김남국·전혜숙·박상혁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김병기·박정·안민석·오영환·문진석·박성준·기동민·김영주·이수진·전용기·윤준병·서영교·이정문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3일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하영제·서일준·이양수·성일종·김태흠·박덕흠·조명희·이명수·권성동·김용환 의원 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성일종·강민국·김정재·이양수·임이자·이명수·정운천·전주혜·김은혜·이종배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김예지·강대식·강민국·곽상도·권영세·金炳旭·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웅·박성민·박진·배현진·백종현·

서범수·서일준·송석준·안병길·양금희·윤두현·이만희·이양수·이종성·전주혜·정찬민·조명희·조태용·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4일 회부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이형석·임호선·안규백·이병훈·최기상·노웅래·한준호·이해식·이수진·김민기·민형배·서영교·이성만·홍익표·이용빈 의원 발의)

8월 5일 회부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1. 8. 5. 김영주·김교홍·김병기·노웅래·민형배·서삼석·이상현·이원욱·임호선·허영·이용빈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1. 8. 5. 김영주·강준현·김교홍·허영·허종식·윤영덕·서삼석·임호선·김병기·이용빈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 5. 정부 제출)

이상 3건 8월 6일 회부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9. 서영교·김민철·민형배·서삼석·오영환·이병훈·이해식·임오경·정정순·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1. 8. 9. 오기형·김경만·김민철·민형배·위성곤·윤건영·윤준병·이용우·홍기원·홍영표·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백혜련·김정호·정성호·오영환·이원택·김남국·김영배·홍익표·김승남·남인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김정호·허종식·서동용·김윤덕·양경숙·윤후덕·어기구·임종성·민홍철·김남국·이병훈·김병욱·정춘숙·이규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1일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임오경·한준호·오영환·박정·

이수진 · 유정주 · 이상헌 · 박상혁 · 이병훈 ·
조정훈 · 이규민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김윤덕 · 김남국 · 김병욱 · 김영진 ·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 서영석 · 이규민 ·
이수진(비) · 임종성 · 정성호 · 최혜영 · 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윤준병 · 장철민 · 김주영 · 오영환 ·
김수홍 · 전재수 · 김성주 · 고용진 · 위성곤 ·
양정숙 · 이용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윤영덕 · 양정숙 · 조정훈 · 문진석 ·
송갑석 · 위성곤 · 이수진(비) · 조오섭 · 이동주 ·
민형배 의원 발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이개호 · 위성곤 · 서삼석 · 윤재갑 ·
홍성국 · 김병기 · 김승남 · 송갑석 · 김희재 ·
오영훈 의원 발의)

이상 5건 8월 12일 회부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송석준 · 강대식 · 김미애 · 김석기 ·
김성원 · 김영식 · 김예지 · 박성민 · 박진 ·
백종현 · 서범수 · 서일준 · 서정숙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윤주경 · 이만희 · 이명수 ·
이종배 · 이종성 · 정찬민 · 정희용 · 조명희 ·
조태용 · 지성호 · 최승재 ·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박완수 · 최형두 · 김용관 · 권영세 ·
최춘식 · 정운천 · 서범수 · 이명수 · 한무경 ·
구자근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백혜련 · 김상희 · 송재호 · 오영환 ·
용혜인 · 이성만 · 임호선 · 최기상 · 최종윤 ·
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6. 14. 황운하 · 강득구 · 강민정 · 김승원 ·

민형배 · 박영순 · 신정훈 · 양정숙 · 오영환 ·
이병훈 · 조승래 · 최혜영 의원 발의)

6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이상민 · 양이원영 · 양정숙 · 김홍걸 ·
박주민 · 송갑석 · 최혜영 · 남인순 · 윤미향 ·
진선미 · 이용빈 · 윤영덕 · 박용진 · 권인숙 ·
홍익표 · 이수진(비) · 이수진 · 이탄희 · 이재정 ·
김용민 · 이동주 · 박성준 · 유정주 · 최강욱 의원
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21. 6. 16. 임이자 · 김성원 · 金炳旭 · 김영식 ·
백종현 · 유경준 · 이종성 · 박대수 · 이현승 ·
안호영 · 홍석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권명호 · 김용관 · 안병길 · 최형두 ·
엄태영 · 태영호 · 정희용 · 이종성 · 강민국 ·
김정재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이용우 · 고영인 · 김영배 · 노웅래 ·
박성준 · 오영환 · 윤준병 · 이수진 · 조웅천 ·
홍정민 · 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엄태영 · 김상훈 · 김희곤 · 박성민 ·
서병수 · 임이자 · 정운천 · 정찬민 · 조태용 ·
홍문표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김성원 · 이종배 · 김정재 · 김승수 ·
박대출 · 윤상현 · 김용관 · 최춘식 · 박대수 ·
박덕흠 · 서일준 · 이양수 · 최형두 의원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양향자 · 장제원 · 서일준 · 이병훈 ·
홍성국 · 송옥주 · 송갑석 · 오영환 · 문진석 ·
이정문 · 김영식 · 이영 · 윤영덕 · 윤한홍 ·
김성환 · 고용진 · 한무경 · 박홍근 · 황운하 ·
조오섭 · 박성준 · 권성동 · 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전재수·김정호·맹성규·박재호·
송옥주·유정주·윤준병·이규민·이병훈·
양이원영 의원 발의)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윤재갑·양정숙·어기구·이동주·
주철현·위성곤·이개호·허종식·김정호·
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신원식·김석기·이양수·배준영·
김승수·박덕흠·金炳旭·김선교·최승재·
박진·윤두현·권명호·정찬민·김기현·
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조오섭·양향자·송갑석·문진석·
윤영덕·최종윤·이병훈·주철현·민형배·
이용빈·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임호선·김민철·김성주·김영배·
오영환·이수진·이장섭·이해식·정태호·
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임호선·이수진·오영환·홍성국·
김민철·김영배·오영훈·정태호·김성주·
이장섭·허영·이해식 의원 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장제원·박성민·백종현·서병수·
서정숙·송석준·유상범·윤주경·이철규·
정진석·정찬민·최승재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임호선·김민철·김성주·김영배·
오영환·오영훈·이수진·이장섭·이해식·

정태호·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양금희·김예지·김정재·김용관·
강대식·윤두현·지성호·김상훈·이주환·
전주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6. 29. 임호선·김민철·김성주·김영배·
오영환·이수진·이장섭·이해식·정태호·
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정춘숙·강선우·김성주·김영진·
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홍근·윤후덕·
이정문·임종성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강훈식·김윤덕·김교홍·한병도·
이원욱·이동주·신영대·이성만·이장섭·
김경협·김병기·이용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정청래·강득구·김남국·김의겸·
소병훈·송갑석·오영환·윤재갑·임오경·
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이원택·이규민·김두관·정성호·
김종민·김경만·한병도·장경태·양정숙·
신정훈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김진표·김병기·김수홍·박광온·
박성준·박찬대·설훈·신정훈·이낙연·
장철민·천준호·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2021. 7. 6. 이철규·하태경·조태용·윤영석·
서일준·한무경·권명호·구자근·김선교·
한기호·양금희·서정숙 의원 발의)

7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21. 7. 6. 서병수 · 김기현 · 김예지 · 김태호 ·
김태흠 · 류성걸 · 박수영 · 배준영 · 양금희 ·
유경준 · 윤두현 · 윤주경 · 이영 · 이주환 ·
장혜영 · 전주혜 · 정동만 · 조수진 의원 발의)

7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김미애 · 박덕흠 · 최승재 · 이종배 ·
박진 · 홍석준 · 태영호 · 김승수 · 김웅 ·
최춘식 · 김정재 의원 발의)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김철민 · 홍기원 · 양기대 · 허종식 ·
임호선 · 홍익표 · 서동용 · 최인호 · 김주영 ·
홍성국 · 박영순 · 정태호 · 오영훈 · 허영 ·
이장섭 · 오영환 · 전혜숙 · 설훈 · 박광운 ·
여기구 · 이개호 · 윤영찬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박완주 · 기동민 · 김민철 · 김영진 ·
변재일 · 신정훈 · 이상현 · 인재근 · 전용기 ·
최혜영 의원 발의)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노웅래 · 한준호 · 이병훈 · 이해식 ·
홍성국 · 송옥주 · 용혜인 · 임종성 · 장경태 ·
양기대 · 임호선 · 이수진(비) · 김민철 · 이용우
의원 발의)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7. 14. 도종환 · 이상현 · 김정호 · 김민철 ·
이병훈 · 박정 · 조승래 · 안민석 · 임오경 ·
이광재 · 김의겸 · 윤준병 · 김철민 · 인재근 ·
유정주 · 김승원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21. 7. 14. 안민석 · 김의겸 · 김정호 · 도종환 ·
문진석 · 박성준 · 백혜련 · 이성만 · 전혜숙 ·
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김수홍 · 고용진 · 김경만 · 김경협 ·
김성주 · 김승남 · 김영진 · 김진표 · 김철민 ·
김홍걸 · 민형배 · 박덕흠 · 박성준 · 안규백 ·
안호영 · 오영훈 · 위성곤 · 윤재갑 · 윤준병 ·
윤후덕 · 이개호 · 이상현 · 이수진(비) · 정운천 ·
한병도 의원 발의)

7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박대수 · 김희국 ·
윤희숙 · 전주혜 · 신원식 · 김형동 · 곽상도 ·
유경준 · 김미애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박대수 · 김희국 ·
윤희숙 · 전주혜 · 신원식 · 김형동 · 곽상도 ·
유경준 · 김미애 의원 발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

(2021. 7. 16. 김웅 · 허은아 · 박대수 · 김희국 ·
전주혜 · 김미애 · 신원식 · 곽상도 · 유경준 ·
윤희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이용빈 · 강득구 · 고영인 · 김경만 ·
김병욱 · 김승남 · 김영배 · 김정호 · 김홍걸 ·
민형배 · 박찬대 · 백혜련 · 서영석 · 신정훈 ·
양정숙 · 유정주 · 윤준병 · 이병훈 · 이용선 ·
이용우 · 이용호 · 이원욱 · 이형석 · 장경태 ·
전혜숙 · 정춘숙 · 조승래 · 조오섭 · 한병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심상정 · 배진교 · 류호정 · 이은주 ·
오영환 · 김민철 · 김주영 · 박상혁 · 이해식 ·
송옥주 · 강은미 · 장혜영 · 진선미 · 이낙연 ·
안규백 · 강민정 · 송석준 · 권영세 · 김예지 ·
남인순 · 김민석 · 박덕흠 · 강선우 · 김철민 ·
이용빈 · 진성준 · 서동용 · 민형배 · 양정숙 ·
천준호 의원 발의)

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21. 7. 19. 이낙연·허종식·윤영찬·이병훈·박정·박광운·윤재갑·김주영·홍성국·설훈·정정순·오영환·어기구·박영순·오영훈·허영·김영배·홍기원·정태호·신영대·서동용·양기대·최인호·홍익표·임호선·이장섭·윤준병·김철민·이개호·전혜숙·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변재일·조승래·설훈·정정순·강선우·도종환·박덕흠·임호선·이장섭·윤영찬·이종배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윤준병·김교흥·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임호선·정정순·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이학영·강선우·김정호·김홍걸·신영대·윤재갑·이규민·이동주·이장섭·이재정·임호선·한준호 의원 발의)

7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26. 송재호·오영훈·김영배·이광재·김민철·한준호·이상헌·김민기·최종윤·맹성규·홍익표·이장섭 의원 발의)

7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김병주·김승원·홍성국·김남국·기동민·이용빈·홍기원·이광재·임호선·정일영·이규민·김민기·윤영덕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김성환·강득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정호·문진석·민형배·박완주·신영대·신정훈·양경숙·양이원영·

양정숙·어기구·우원식·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소영·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학영·이해식·천준호·허영·홍성국·김남국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이소영·강민정·이해식·허영·이용우·고민정·민형배·이용선·윤준병·이용빈·김성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이종배·윤영석·김선교·지성호·金炳旭·조수진·태영호·곽상도·김승수·박덕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이종배·지성호·조수진·김승수·곽상도·김선교·태영호·金炳旭·윤영석·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2021. 7. 30. 정부 제출)

8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지리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설훈·윤영찬·허영·민형배·오기형·용혜인·김진표·윤재갑·김의겸·이용우·전용기·윤미향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김석기·정진석·서병수·金炳旭·태영호·김선교·김형동·서정숙·정희용·지성호·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7. 28. 송기현·김병욱·김종민·민병덕·박성준·소병철·송재호·이광재·주철현·허영·황운하 의원 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김예지·강대식·강민국·곽상도·

권영세 · 金炳旭 · 김석기 · 김선교 · 김승수 · 김영식 · 김웅 · 박성민 · 박진 · 배현진 · 백종현 · 서범수 · 서일준 · 서정숙 · 송석준 · 안병길 · 양금희 · 윤두현 · 이만희 · 이양수 · 이종성 · 전주혜 · 정찬민 · 조명희 · 조태용 · 하영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8. 9. 박주민 · 강병원 · 고민정 · 권인숙 · 김상희 · 김홍걸 · 송갑석 · 용혜인 · 유정주 · 이재정 · 최강욱 · 최혜영 · 홍익표 의원 발의)

8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최혜영 · 강선우 · 김상희 · 김승원 · 김한정 · 김홍걸 · 남인순 · 서영석 · 소병훈 · 오영환 · 이탄희 · 조오섭 · 허종식 의원 발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김성주 · 허종식 · 이학영 · 이용빈 · 최종윤 · 민형배 · 황운하 · 양정숙 · 김민석 · 박상혁 · 고민정 · 김원이 · 정춘숙 · 윤준병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강민국 · 정동만 · 박성민 · 김영식 · 유의동 · 윤창현 · 정희용 · 金炳旭 · 한무경 · 서일준 의원 발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맹성규 · 강선우 · 김승남 · 김철민 · 민병덕 · 박성준 · 소병훈 · 송옥주 · 송재호 · 위성곤 · 윤관석 · 윤준병 · 이광재 · 이성만 · 허종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이수진(비) · 김경협 · 김영배 · 송옥주 · 심상정 · 안호영 · 윤미향 · 윤영덕 · 이규민 · 장경태 의원 발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김승수 · 백종현 · 태영호 · 김예지 · 최형두 · 金炳旭 · 추경호 · 김용관 · 김기현 · 이종성 · 김정재 · 지성호 · 김웅 · 서일준 ·

유경준 · 이달곤 · 이종배 의원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이종배 · 박완수 · 김형동 · 김태호 · 김승수 · 김성원 · 이종성 · 추경호 · 김선교 · 성일중 · 박덕흠 · 송석준 의원 발의)

이상 7건 8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이만희 · 김선교 · 권명호 · 박덕흠 · 이명수 · 윤한홍 · 김석기 · 이용 · 김태흠 · 박형수 · 이양수 의원 발의)

7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서영교 · 강민정 · 김영배 · 김영호 · 박상혁 · 박홍근 · 양정숙 · 오영환 · 오영훈 · 이해식 · 임오경 · 임호선 · 한병도 의원 발의)

7월 2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회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

(2021. 7. 1. 김한나로부터 박대출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1일 회부됨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관한 청원

(2021. 7.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외 5인으로부터 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16일 회부됨